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기초조사 자료집

주요국의 법제교류 지원사업의 현황

국제협력실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기초조사 자료집

주요국의 법제교류 지원사업의 현황

국제협력실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01 독일의 법제교류지원사업 현황 _ 황원재 / 5

제1장 개 관 ····· 7
제2장 기관별 법정비지원사업 현황 및 내용 ····· 9
제3장 평가와 시사점 ····· 15

02 미국의 법제교류지원사업 현황 _ 김민조 / 21

제1장 개 관 ····· 23
제2장 법정비지원사업 현황 및 내용 ····· 27
제3장 평가와 시사점 ····· 37

03 일본의 법제교류지원사업 현황 _ 강창보 / 41

제1장 개 관 ····· 43
제2장 담당기관별 법정비지원사업 현황 및 내용 ····· 45
제3장 평가와 시사점 ····· 61

04 중국의 법제교류지원사업 현황 _ 백영주 / 69

1. 개 관 ····· 71
2. 법정비지원사업 현황 및 내용 ····· 73
3. 평가와 시사점 ····· 79

05 프랑스의 법제교류지원사업 현황 _ 양리원 / 83

제1장 개 관 ····· 85
제2장 담당기관별 법정비지원사업 현황 및 내용 ····· 87
제3장 평가와 시사점 ····· 99

06 국제기구의 법제교류지원사업 현황 _ 임희선 / 103

제1장 개 관 ····· 105
제2장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법정비지원사업 현황 및 내용 ····· 107
제3장 유엔개발계획(UNDP) 법정비지원사업 현황 및 내용 ····· 111
제4장 평가와 시사점 ····· 115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독일의 법제교류지원사업 현황

황 원 재
(고려대학교 법학과 강사)

제1장 개 관
제2장 기관별 법정비지원사업 현황 및 내용
제3장 평가와 시사점

제1장 개 관

공적개발원조 사업 중 법정비지원사업은 관련법을 구축하거나 기관 또는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시설을 지원하여 피지원국 정치질서의 투명성, 안정성, 효율성을 분석하고 이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피지원국의 정치행위와 분쟁해결 절차 및 이러한 정치과정이 독일과의 관계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1)]

법정비지원사업이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 중요한 이유는 피지원국 행정부의 법률이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경우에만 Agenda 2030의 목표가 빨리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법치국가의 원칙이 확립된 경우에만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 또한 법정비가 갖추어진 법치국가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시민이 보호된다. 이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결정이 예측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자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되지 않을 것임을 신뢰하는 경우에만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역사적 발전과정을 거치는 것도 아니며, 서로 상이한 헌법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적인 법정비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독일의 법제도를 단순히 다른 나라에 이식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정비지원사업을 행할 때에는 피지원국에 현존하는 법률을 존중하며 개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적당한 방법을 찾기 위하여 피

1) 구체적인 법정비지원사업에 대한 간단한 정보는 http://star-www.giz.de/fetch/1l8WQ1u01XcWs000g0/giz2012-0346en-rechtsstaatlichkeit.pdf 참고.

지원국과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보호와 같은 목표는 독일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중요한 핵심과제 이므로, 법제교류지원사업을 행함에 있어 그 지원의 방식이나 목적이 상이함에도 언제나 그 원조사업의 핵심기초로 남아있어야 한다.[2] 구체적으로 2011년 5월 BMZ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 인권존중에 관한 기준(Menschenrechte in der deutschen Entwicklungspolitik)을 제안하였고,[3] 이 기준은 BMZ의 모든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구속력을 갖는다.

2)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http://www.bmz.de/de/mediathek/publikationen/reihen/infobroschueren_flyer/flyer/menschenrechte.pdf 참고.

3) https://www.bmz.de/de/themen/allgemeine_menschenrechte/deutsche_entwicklungspolitik/menschenrechtskonzept/index.html 참고.

제2장 기관별 법정비지원사업 현황 및 내용

제1절 관련법 구축

관련법 구축사업으로는 페루에 대한 형사절차 및 사법절차 개정작업을 지원한 GIZ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페루 사법부와 공조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10년 7월 1일에 시작하여 2015년 12월 1일에 사업이 종료되었다. 사업예산으로는 275만 유로가 책정되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페루가 진행하던 사법제도의 개정작업을 후원하고 그 개정이 법치국가의 원칙에 합치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외에도 세르비아에 대한 사법제도 개정 지원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2010년 12월 15일 시작되어 2016년 12월 31일 종료될 것으로 계획된 사업으로, GIZ와 세르비아의 유럽통합위원회가 같이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업예산은 530만 유로이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세르비아가 유럽에 가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으로 사법 및 입법수준을 높이는 것과 이에 맞추어 실제로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2010년 10월에는 GIZ가 캄보디아 여성부와 함께 여성에 대한 사법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과 아동에 대하여 효율적인 법적 보호와 필요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있었다. 사업에는 약 300만 유로가 지원되었고, 2010년 11월 1일에 시작되어 2015년 5월 31일에 종료되었다.

GIZ는 아르메니아 사법부, 아제르바이잔 및 조지아 사법부 등과 함께 이 지역의 사법제도를 광범위하게 개혁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업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실현, 법

률과 사법절차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2009년 10월 22일 시작되었고 2015년 9월 16일 사업이 종료되었다. 총 사업비는 약 1683만 유로에 달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목적을 갖는 사업이 2014년 10월 1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총 1116만 유로의 사업비를 갖고 시행중에 있다.

2013년 2월 6일부터 2016년 8월 30일까지 GIZ는 유럽 남동지역의 사법체계를 유럽 공통의 사법기준이나 코펜하겐 협약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총 400만 유로를 투자하여 지역 법정비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6년 6월 23일부터 이 사업은 총 260만 유로를 가지고 다시금 2018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시스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GIZ는 190만 유로의 지원금을 가지고 2016년 9월 8일부터 몽골의 법정비지원사업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몽골지역의 천연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안정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제2절 기관 역량강화

GIZ는 또한 아메리카 국가연합(미주기구)과 함께 지역 국제법을 강화하고 남미지역의 사법절차에 대한 개방성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2013년 4월 1일 시작되어 2016년 10월 31일 종료되었고, 450만 유로가 지원되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남미 지역에서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이와 함께 선별된 국가에 대한 사법제도의 개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2016년 12월 19일 총 사업금 300만 유로를 갖고 다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2011년 11월에는 GIZ가 중앙아시아 지역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업은 2011년 10월 25일 시작하여 2015년 3월 31일 종료하였으며, 총 지원비는 550만 유로에 달하였다. 이 사업은 지역 정부와 함께 사법부 및 위원회가 함께 하였다. 사업의 목적은 헌법합치적 사법 및 행정을 담보하여 이 지역 투자자들에게 투자위험을 줄이고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 있었다. 이와 동일한 목적을 갖는 사업이 GIZ에 의하여

2014년 7월 2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총 800만 유로의 지원금을 갖고 현재 시행중에 있다.

GIZ는 또한 2013년 콜롬비아 정부와 함께 혼란기의 사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업은 국가 기관이 혼란기중 중요한 사법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게 만들어 사법정의가 역사적으로 기록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약 203만 유로가 지원되었으며, 2013년 10월 1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사업이 진행되었다.

GIZ는 2015년 7월 12일부터 UN개발계획과 함께 150만 유로의 사업금을 가지고 과테말라에 대한 범죄자 추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효율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소추와 처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작업 역시 병행되고 있다.

GIZ는 2014년 11월 6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720만 유로의 지원금을 갖고 중국에 대한 법정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법정비 사업이라기보다 중국이 법치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관에 대한 혹은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을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치국가에 대한 지원은 피지원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사회제도적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2009년 10월 23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800만 유로의 지원금을 갖고 동일한 사업목적을 갖는 사업이 진행된 적이 있다.

GIZ는 몽골 법무부와 함께 150만 유로의 사업금으로 2014년 3월 14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법률정비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업은 법무부와 전문위원회에서 사용되는 절차와 방법들을 법률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하여 현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법률제도와 절차를 현대화하여 경제, 특히 광물개발 및 보호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외에도 몽골의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필요한 법적 자문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NGO가 60만 유로의 지원금을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고 있다.

제3절 인적 역량강화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GIZ의 2009년 원조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GIZ가 아프가니스탄 법무부와 함께 진행한 사업으로 1250만 유로가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지원되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사법 및 경찰행정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함에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2012년 9월 20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동일한 내용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수행되었다. 이 사업 역시 GIZ와 아프가니스탄 법무부가 함께 진행하였으며, 총 1010만 유로가 지원되었다.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역시 헌법에 부합되게 사법 및 경찰행정이 수행되도록 지원함에 있었다.

2011년에는 GIZ와 코소보 사법부가 함께 코소보 사법개혁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지원 사업은 2011년 11월 15일에 시작되어 2016년 2월 9일에 종료되었고, 약 332만 유로가 지원되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법 인력에 대한 교육사업과 함께 사법 보조수단이나 사법적 조치를 강화하여 코소보의 사법질서가 유럽연합의 기준에 합치되도록 지원하며, 그리고 입법 및 행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12년 12월 17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GIZ는 베트남 정부와 함께 필요한 법률사항에 대한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즉 법치국가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특히 입법 분야에서 법률에 대한 자문을 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총 395만 유로의 지원금이 투자되고 있다.

또한 GIZ는 코소보 지역의 사법과 행정절차의 개선을 위하여 총 200만 유로의 사업금을 가지고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GIZ와 코소보 사법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15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인력에 대한 교육사업과 함께 사법적 제재수단들이 유럽연합의 사법제도 수준에 다다르도록 하며, 입법절차를 공고히 하고 법적용에 대한 신뢰를 높

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2016년 10월 12일부터 현재까지 200만 유로의 지원금을 가지고 다시금 진행 중에 있다.

제4절 물리적 시설 지원

물리적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2012년 10월 30일에 행해진 GIZ와 방글라데시 내무부의 구금 및 교도시설 개량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또한 정치적 인권환경의 개선과 부패방지를 위한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2012년 10월 30일 시작된 이 사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총 920만 유로가 지원될 예정이다.

브라질의 열악한 구금시설을 개선하고 피구금인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카톨릭 중앙 원조협회(Katholische Zentralstelle für Entwicklungshilfe e.V.)는 2012년 5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약 28만 유로를 브라질에 지원하였다.

제3장 평가와 시사점

피지원국의 국가 행정을 지원하는 사업은 DAC코드 150에 해당한다. 이 중 DAC코드 151은 정부 및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사업 일반을 의미하며, DAC코드 152는 분쟁예방과 해결, 평화와 안전에 관한 지원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국가 행정을 지원하는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DAC코드 160이며 이는 기타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DAC코드 152와 DAC코드 160은 검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제교류지원사업에 대한 범위를 넓히면 분쟁예방과 해결, 평화와 안전에 관한 지원을 위한 법률이나 기타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법률이 존재할 수 있으나, 좁은 의미에서 국가행정 지원의 측면에서 법제교류와 사법질서의 효율성과 신뢰보호를 위한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DAC코드 151을 세분화한 CRS코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RS코드 15110은 공적인 영역에서 정치와 행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CRS코드 15111은 공적인 재원을 관리하는 행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CRS코드 15112는 지역분권화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후원 사업을 의미한다. CRS코드 15113은 부패에 대한 예방조직과 기구에 대한 후원을 의미한다. CRS코드 15130은 법률 및 법원 시스템의 개선사업에 대한 후원을 의미하며, 15150은 시민사회의 민주적 참여를 후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CRS코드 15151은 선거에 관하여, 15152는 입법기구와 정당에 대한 후원을 의미한다. CRS코드 15153은 언론과 정보의 자유를, 15160은 인권보호 지원 사업을 의미한다. CRS코드 15170은 여성에 대한 동등대우를 위한 조직이나 기구에 대한 후원을 의미한다.

법제교류지원사업의 핵심은 CRS코드 15130이다. CRS코드 15130은 법률의 발전과 법

원에 대한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법기구를 후원하고 그 조직 및 절차를 개선하는 사업, 사법부와 내무부의 법률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고, 법관과 법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입법에 도움을 주거나, 법률가의 양성을 위한 시설을 지원하며, 공적인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률이 지켜지도록 지원하고, 사법소추기구와 경찰, 교도소와 같은 구금시설의 개선과 피소추자나 피구금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을 후원하거나, 사법제도 외에 중재와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등의 사업이 여기에 포함된다.[4)]

CRS코드 15130에 포함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운영기관이 취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법률체계의 개선사업, 헌법·법률·기타 명령에 대한 개선작업, 법률이나 헌법에 합치되는지에 대한 검토 작업 및 법률개정작업 지원을 들 수 있으며, 또한 형식적 법률과 관행적 법률 간의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을 들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법제교류지원사업은, 특히 CRS코드 15130 사업은 주로 GIZ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또한 인권보호 지원 사업에 관한 CRS코드 15160 역시 GIZ에 의하여 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KFW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다. 인권보호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카톨릭 중앙 원조협회(Katholische Zentralstelle für Entwicklungshilfe e.V.)의 활동이 두드러진다는 점도 특이한 점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카톨릭 중앙 원조협회의 지원금 규모는 GIZ나 KFW에 비할 바가 못 되나, 다양한 나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분권화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후원사업(CRS코드 15112) 역시 GIZ와 KFW에 의하여 주로 지원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동등대우를 위한 조직이나 기구에 대한 후원사업(CRS코드 15170) 역시 주로 GIZ에 의하여 후원되고 있으나, 인권보호 지원사업의 경우와 같이 카톨릭 중앙 원조협회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부패에 대한 예방조직과 기구에 대한 후원사업(CRS코드 15113)은 GIZ를 포함한 다양한 기구에 의하여 사업이 후원되고 있다.

4) https://www.bmz.de/de/zentrales_downloadarchiv/Ministerium/ODA/0_4_Foerderbereichsschluessel_ab_Berichtsjahr_2011_mi_2013_0263351_11_.pdf 참고.

독일의 법제교류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인권보호와 여성에 대한 동등대우와 같은 보편적인 기준에 맞추어 수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법제교류지원사업은 독일과 피지원국간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고려하며, 지원의 경제적 효율성을 무시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4년 3월에 시행된 몽골에 대한 GIZ의 지원 사업은 법률정비사업임이 분명함에도 그 정비의 목적이 피지원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법률제도와 절차의 현대화를 통하여 몽골 광물자원 개발 및 보호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또 다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피지원국에 대한 피상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법제교류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독일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참고문헌

BMZ, Die Menschenrechte in der deutschen Entwicklungspolitik (11.2014), http://www.bmz.de/de/mediathek/publikationen/reihen/infobroschueren_flyer/flyer/menschenrechte.pdf

BMZ, Kurzübersicht zum Förderbereichsschlüssel ab Berichtsjahr 2011, https://www.bmz.de/de/zentrales_downloadarchiv/Ministerium/ODA/0_4_Foerderbereichsschluessel_ab_Berichtsjahr_2011_mi_2013_0263351_11_.pdf

BMZ, Recht & Justiz, Rechtsstaatlichkeit,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t a Glance (11.2012), http://star-www.giz.de/fetch/1l8WQ1u01XcWs000g0/giz2012-0346en-rechtsstaatlichkeit.pdf

https://www.bmz.de/de/ministerium/zahlen_fakten/transparenz-fuer-mehr-Wirksamkeit/iati/index.jsp

https://www.bmz.de/de/ministerium/zahlen_fakten/transparenz-fuer-mehr-Wirksamkeit/Veroeffentlichung-gemaess-IATI-Standard/index.html

https://www.bmz.de/de/themen/allgemeine_menschenrechte/deutsche_entwicklungspolitik/menschenrechtskonzept/index.html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미국의 법제교류지원사업 현황

김 민 조
(케이엘에이 법률사무소 변호사)

제1장 개 관
제2장 법정비지원사업 현황 및 내용
제3장 평가와 시사점

제1장 개 관

미국의 공적원조는 평화 및 안보(Peace & Security), 민주주의와 인권 및 거버넌스(DRG-Democracy, Human Rights, and Governance), 보건(Health), 교육과 복지(Education & Social Services), 경제개발(Economic Development), 환경(Environment),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 프로그램 관리(Program Management), 그리고 기타(Multi-Sector) 분야로 분류된다[1]. 이중 관련법 구축에 관한 법제교류지원사업은 주로 경제개발 프로젝트로 분류되고, 기관 및 인적 역량 강화에 관한 사업은 주로 민주주의와 인권 및 거버넌스 분야의 일부로 포섭된다. 한편, 물리적 시설 지원에 관한 사업은 여러 분야에 산재되어 있다.

<표> 미국의 2016년 분야별 대외원조 금액

(단위: 달러)

분야	평화 및 안보	민주주의, 인권, 거버넌스	보건	교육과 복지	경제개발
금액	146.6억	2.26억	9.73억	1.43억	2.96억
분야	환경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관리	기타	합계액
금액	1.77억	7.47억	1.59억	3.18억	450.5억

(출처: www.foreignassistance.gov)

미국의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공적 지원은 미국무부(Department of State), 미국국제개발처(USAID –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MCC(Millenium Challenge Corporation) 등 여러 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교류지원사업에 관해

1) U.S. Foreign Assistance Data Tool, http://www.foreignassistance.gov

서는 USAID가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USAID 산하 DRG 센터(Center of Excellence on Democracy, Human Rights and Governance)가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2012년 설립된 DRG 센터는 총 9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나, 법제교류지원사업에 관한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GROL(Governance & Rule of Law)이다[2]. GROL의 지원 사업은 입법강화(Legislative Strengthening)에 관한 사업과 법치(Rule of Law)에 관한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입법강화 지원 사업(Legislative Strengthening)은 지원대상국 입법부와 의원 그리고 소속 직원의 역량과 능력을 계발하여 대상국 입법기관의 입법 및 감독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의기관들이 민의를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의안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법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법치 지원 사업(Rule of Law)은 대상국이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사법부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관련법 구축지원 사업, 그리고 각종 연구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한다.

USAID는 미국의 법제교류지원사업을 주도하지만, 실제로 지원대상국 담당자들과 협력하여 법제교류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USAID와 지원 사업 수행계약(IQC- Indefinite Quantity Contract)을 체결한 시행기관(Contractor) 및 그 하청기관들이다. 시행기관들은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세부계획을 기획할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당해 지원사업 관한 결과보고까지 준비한다. 법제교류사업은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므로, USAID와 지원 사업 수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많지 않다. 주된 시행기관으로 Tetra Tech, Chemonics International, DAI(Development Alternatives INC.), SUNY/CID(The Research Foundation of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등이 있다. 시행기관은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하청기관과 협력하기도 한다.

2) USAID, User's Guide to Democracy, Human Rights and Governance Programming, January 2017, 2쪽.

미국의 법제교류지원사업은 크게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사업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양분된다. 경제발전을 위한 법제교류지원사업은 대상국의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경제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예를 들어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상법 등 각종 상사에 관한 법령의 작성을 지원한다.[3].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법제교류지원사업은 통상적으로 대상국에 민주적 절차 및 관행을 정착시키고 구성원들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예를 들어 입법절차에 관여하는 의원 또는 입법사무관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4], 입법절차를 개선하거나, 구성원들의 정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을 지원한다.[5] 또 정치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시설을 구축하기도 한다[6].

미국은 법제지원교류사업을 통해 지원대상국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자 한다[7]. 특히 DRG와 관련하여 “자유와 자긍심, 그리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투명한 민주주의를 구축”하려 한다[8]. 미국의 법제교류지원사업은 여러 원조분야 거쳐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테러와 극본주의를 예방하여 국가안보를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9].

3) 우크라이나 상사법 프로젝트 (Ukraine Commercial Law Project) 참조 (계약번호: 121-C-00-00-00823-00).
4) 베트남 입법조사 프로그램(Vietnam Legislative Research Program) 참조 (계약번호: DFD-I-00-05-00219-00).
5) 이라크 입법강화 프로그램(Iraq Legislative Strengthening Program) 참조 (계약번호: 263-I-03-06-00015-00)
6) 베트남 STAR 플러스 프로젝트(Support for Trade Acceleration Plus) 참조 (계약번호: EEM-I-00-07-00009-00)
7) USAID, USAID Strategy on Democracy Human Rights and Governance, June 2013, 4쪽.
8) USAID 위 자료 7쪽.
9) USAID, The Development Response to Violent Extremism and Insurgency: Putting Principles into Practice 2011 재인용.

제2장 법정비지원사업 현황 및 내용

제1절 관련법 구축

미국의 법령 구축사업은 독자적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다른 프로젝트에 부대하여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경제개발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는 현대적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이 되는 상사관련 법령 구축사업을 진행하거나, 입법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는 입법절차 또는 의정절차에 관한 법령 구축을 지원하거나, 법치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는 형법 또는 형사절차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공한다. 따라서 미국의 관련 법령 구축 프로그램의 추진방식이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구축사업의 원인이 된 프로젝트의 추진목표 및 방향을 같이 확인하여야 한다.

1. 몽골 모기지증권법 입법지원

미국은 USAID/몽골을 통해 몽골의 지속가능하고 신속한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EPRC – Economic Policy Reform and Competitiveness Project)[10]를 2003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추진하였다. EPRC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은 개방적인 정책 도입을 촉진하고, 민간부분의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몽골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시행기관은 몽골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몽골 모기지회사(Mongolian Mortgage Corporation)와 기업지배구조개발센터(Corporate Governance Development Center) 등 기관을 설립하고, 각종 법령(안)의 작성을 지원하였다[11]. 프로젝트 시행기관이 작성하여

10) 계약번호: 438-C-00-03-00021-00; 시행기관: Chemonics International Inc.

몽골 자본규제위원회(FRC- Financial Regulatory Commission)에 전달한 법률(안)은 '몽골 담보 모기지 채권법(안)', '몽골 유동화 및 자산담보부증권법(안)', '몽골 담보 모기지 채권에 관한 규칙(안)', '몽골 유동화 및 자산담보부증권에 관한 규칙(안)'이다[12]. 시행기관은 프로젝트 시작 당시 러시아법제에 기초한 모기지 증권법률(안)을 제공받았으나, 이는 러시아의 일부 대형 모기지은행의 업무 관행을 반영한 부적절한 것이었다. 따라서 시행기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업무관행(Best Practice)이 잘 투영된 유럽형 모기지법을 기초로 초안을 수정하였다. 몽골의회는 수정된 입법안을 검토한 후 결의하였으나[13], 논의 당시 변제를 해태한 채무자를 엄격하게 대한 유럽식 입법안에 거부감을 보였다고 한다[14].

2. 길깃-발리스탄 관광진흥법 입법지원

길깃-발리스탄 관광진흥법 입법지원사업은 파키스탄 중소기업(SMEs)을 지원하기 위한 FIRM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15]. 길깃-발리스탄은 파키스탄 북부에 소재한 자치지구고, 길깃-발리스탄 의회는 관광에 관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 받았다[16]. 길깃-발리스탄의 관광관련 법령은 호텔 및 요식업법, 여행사법, 그리고 관광안내원법으로 구성된다. 이들 법령은 1976년 시행된 것들로 과거 입법을 통해 가격을 통제하고자 했던 당시 정부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현대적인 관행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시행기관은 길깃-발리스탄에 필요한 관광입법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중앙정부 관료와 길깃-발리스탄 지방정부 관료들을 차례대로 만나 협의했고, 길깃-발리스탄 여행업계에 종사하는 민간사업자들과도 면담하였다[17].

---

11) USAID, Building a Market Economy in Mongolia – Final Report of the Economic Policy Reform and Competitiveness Project, June 2011, 25쪽

12) EPRC Project/Chemonics International Inc., Development of Mortgage Securities Laws, July 2007, 1쪽.

13) USAID, Building a Market Economy in Mongolia – Final Report of the Economic Policy Reform and Competitiveness Project, June 2011, 27쪽.

14) EPRC Project/Chemonics International Inc., 앞의 자료 7쪽.

15) 계약번호: EEM-I-00-07-00008-00(입법지원 프로젝트 계약번호: EEM-4-07-07-00008-00); 시행기관: Chemonics International Inc.

16) USAID, Draft Tourism Laws Gilgit-Baltistan, October 2013, vii쪽

17) USAID, 위 자료 1쪽.

시행기관은 개정을 통해 현대적인 관행을 정착시키면서 동시에 길깃-발리스탄 자치정부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호텔 및 요식업법을 개정하여 호텔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국제적 ISO표준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또 호텔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방실 요건을 15개에서 5개로 줄이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여행사법과 관련하여, 관광운영자에 대한 정의를 더 명확하게 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출하였다. 또, 관광안내원법과 관련하여 등록된 관광안내원을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자문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방식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18].

3. 미얀마 농지법 입법지원

미얀마 농지법 입법지원사업은 USAID의 토지소유권 프로젝트[19]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미얀마의 2012년 농지법에 의거, 농가는 정부의 인가 없이 작물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휴작할 수 없었다. 더 나아가 2012년 농지법의 번잡한 농지분류체계로 인해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재배 방법 역시 규제 대상이다[20]. 미얀마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규제는 농가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역시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규제완화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USAID는 농지법 개정안을 작성하였다. 여러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연구조사한 결과, USAID은 (1) 구농지법 중 작물의 변경과 휴작을 금지하는 조문과, 작물을 변경하기 위한 신청절차를 규정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2) 여성의 농지 소유권을 보장하고, (3) 소수민족의 공유토지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4) 토지분류체계를 간소화 하고, (5) 농지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완화하거나 비범죄화하는 조치를 제안하였다.

18) USAID 위 자료 7~13쪽.

19) Land Tenure Project <https://www.land-links.org/usaid-land-projects/>

20) USAID, Freedom To Farm: Agricultural Land Use, Crop Selection, Fallowing, And Recommended Changes To The Farmland Law To Strengthen Land Tenure Security, August 2017, 2쪽

4. 아이티 형법 및 형사절차법 개정안 입법지원

미국은 사법정의 프로젝트(Projustice Project)[21]의 일환으로 아이티 형법 및 형사절차법 개정안 작성을 지원하였다. 사법정의 프로젝트는 아이티 정부의 안정과 안보를 증진하고,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교육훈련의 부족과 반복되는 부정부패, 그리고 관련 형법규정의 미비로 인해 아이티의 사법 시스템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아이티 사법당국의 비효율성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2006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감된 전체 인원의 3%만 유죄판결을 받았고, 투옥된 전체인원의 95%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국 USAID 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사법정의 프로젝트를 2009년 개시하였다. 프로젝트에는 사법정의시스템의 효율성 개선사업 등을 포함하여 형법 및 형사절차법 개정안 작성사업도 포함되었다[22].

아이티의 형법 및 형사절차법은 1835년 도입된 이래 큰 개정 없이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었다. 너무 오래전에 제정된 법 규정을 사용하다보니 인권보호와 형사사법의 신속성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은 (1) 수사치안관에게 주어진 일부 권한을 검사에게 이관하고, (2) 검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규율하고, (3) 기소사실 및 혐의의 적시절차(Arraignment)를 도입하고, (4) 재판전 구속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5) 양형협상제도(Plea Bargain)를 도입하고, (6) 대체적 선고제도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시행기관은 2012년 9월 개정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였고, 아이티 정부는 동 개정안을 2012년 12월 승인하였다[23][24].

5. 우크라이나 상사 법령 입법 지원

미국은 상사법 센터(Commercial Law Center – CLC)를 개설한 후, 개설된 상사법 센터

21) 계약번호:521-C-00-09-00018-00; 시행기관 Tetra Tech DPK.
22) USAID, Improving Justice Service Delivery And Sector Reform In Haiti (Projustice), July 2016, vi쪽.
23) USAID, 위 자료 25쪽.
24) 보고서 작성일 기준 아이티 의회 심의 대기 중.

를 통해 상사에 관한 법령의 입법을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상사법 프로젝트(Ukraine Commercial Law Project)[25]를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운영하였다. 프로젝트가 시작되던 당시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구소련 시절 제정된 법령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의 상사관련 법령은 시장경제질서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기관은 상사법센터와 협력하여 모기지법, 담보거래법, 민법 제4편(지적재산권), 상업등기법, 판결접근법 등 총 28개 상사관련 법령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중 민사절차법, 민법 제4편(지적재산권) 등은 공포되어 시행중이다[26].

상사법 프로젝트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변화에 대한 저항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예를 들어 일부 이익단체의 반대로 민법과 경제법 사이의 충돌을 해소하는 법률안의 도입이 저지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자유로운 상행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민법과 구소련 당시 상업을 규제하는 경제법을 동시에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과 경제법은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규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 법원은 일관된 판례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상사 영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어려움의 해소를 겨냥한 것이었으나, 일부단체의 반대로 저지되었다. 기타 회사법 등 중요한 법령 역시 정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에 관한 상당수 관련 법령이 시행되었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우크라이나의 비즈니스 환경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 받는다[27].

제2절 기관 역량강화

미국의 기관역량 강화사업은 인적역량 강화사업 또는 물리적 시설 구축사업과 병행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기관의 입법 연구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연구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또는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입법관련 기관을 설립하면서 물리적 시설(사무용

25) 계약번호: 121-C-00-00-00823-00; 시행기관:Emerging Markets Group, Ltd.
26) USAID, Ukraine Commercial Law Project, May 2008, 13쪽.
27) USAID, 위 자료 2쪽

빌딩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을 같이 구축하는 식이다. 아래 소개하는 기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역시 인적역량 강화사업 또는 물리적 시설 구축사업과 병행하여 진행된 프로젝트들이다.

1. 아프가니스탄 의회 지원 프로그램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의회 지원 프로그램(APAP – Afghanistan Parliamentary Assistance Program)[28]을 2004년부터 운영해 왔다. APAP의 네 가지 목표는 (1) 상원(Meshrano Jirga)과 하원(Wolesi Jirga)의 입법절차를 개선하고, (2) 행정부에 대한 감독견제 기능을 활성화하고, (3) 상하원의 대민기능을 개선하고, (4) 상하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29].

APAP는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회에 직접 조언할 수 있는 기술지원 인력을 상원에 여섯 명 그리고 하원에 다섯 명 파견하였다. 기술지원 인력은 각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재무 분석, 정책 분석, 그리고 절차적 문제에 대한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각 위원회의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 APAP는 의안 요약 준비절차, 위원회 운영절차, 그리고 의회 감사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APAP는 의회의 대민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시민사회단체(CSOs)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에 의거 시민사회단체는 의회에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단체는 의안에 대한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 APAP는 의회 소속 사무관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의회의 효율성과 역량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회 사무관들에게 컴퓨터 및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방법과 입법안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였다[30].

28) 계약번호: AID 306-C-12-0001; 시행기관: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UNY/CID)

29) USAID, Afghanistan Parliamentary Assistance Program (APAP), April 2013, 12쪽.

30) USAID, 위 자료 22쪽.

2. 이라크 입법강화 프로그램

미국은 이라크 국회(COR – Council of Representative)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이라크 입법강화 프로그램(Iraq Legislative Strengthening Program)[31]을 2008년부터 추진하였다. 이라크 입법강화 프로그램은 이라크 의회개발센터 지원사업, 교육훈련 사업, 기관 역량강화 사업, 의회 감독기능 강화 사업 등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도입 당시 이라크 국회는 여러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의회에 어울리지 않는 용어의 사용, 잦은 의정절차 보이콧, 의장의 임의 퇴장, 의정 일정의 임의 변경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시행기관은 이라크 국회 관계자 등과 협력하여 모범 위원회 운영 매뉴얼, 감독 매뉴얼, 의회 절차법 개정안, 의회사무관 훈련 매뉴얼, 이라크 국회 운영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였다[32].

제3절 인적 역량강화

인적역량 강화사업은 한편으로는 추진하기 가장 쉬운 법제교류지원사업이면서 동시에 그 성과를 확인하기 가장 어려운 사업이기도 하다. 통상적으로 인적역량 강화사업은 여러 형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적절한 교재와 강사만 구하면 저비용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 하지만,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석자들의 전문성 내지 능력이 얼마만큼 개선되었는지는 곧장 확인하기 어려운 성격의 것이다. 따라서 인적역량 강화사업의 경우에는 성과를 확인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대상국 정부의 요구 내지 니즈(Needs)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그에 걸맞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멕시코 교역능력 육성 프로젝트

멕시코 교역능력 육성 프로젝트(Mexico Trade Capacity Building Project)[33]는 2007년

31) 계약번호: 263-I-03-06-00015-00; 시행기관: AECOM

32) USAID, Final Report: Iraq Legislative Strengthening Program, March 2012, 26~31쪽.

33) 계약번호: 523-A-00-06-00044-00; 시행기관: NLCIFT - National Law Center for Inter-American Free Trade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6년간 진행된 사업이다. NLCIFT(National Law Center for Inter-American Free Trade)는 멕시코의 비즈니스 및 법률 환경과 사법정의를 개선하기 위해 연방법원 및 주법원과 긴밀히 협력하였다.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NLCIFT는, (1) 연방 및 주법원 법관, 법원사무관, 변호사, 공익법무관, 법대 교수 및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구두변론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2) 저당권법 개정안을 작성하고, (3) 경쟁법 및 정책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방법원 판사들에게 제공하고, (4) 상법 등에 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였다.

프로젝트 운영기간 동안 법관, 변호사, 공익법무관 그리고 기타 법조계 종사자 약 2,000명이 구두변론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았다. 교육훈련 덕분에 이들은 개정 멕시코 소송절차법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었다고 평가 받는다[34]. 또 약 70명의 연방법원 판사들을 대상으로 경쟁법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은 경쟁법에 관한 실제 사례를 해결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고, 사례분석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NLCIFT는 대체적 분쟁해결(ADR)을 촉진하기 위해 "모범 상사 계약 관행과 파산절차에 있어 채권자 및 채무자의 권리, 그리고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 있어 사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일련의 컨퍼런스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였다[35].

NLCIFT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헌신적인 현지파트너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현지 파트너 기관 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NLCIFT는 프로젝트가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36].

2. 베트남 입법조사 프로그램

베트남 입법연구소(Institute for Legislative Studies)는 연구원의 능력과 전문성을 육성하기

34) NLCIFT, Mexico Trade Capacity Building Project – Enhancement Of The Business And Legal Environment And Trade Capacity Through Legal Reform And Improvements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By Commercial Courts In Mexico, 2013, 2쪽.

35) NLCIFT, 위 자료 15쪽 ~ 16쪽.

36) NLCIFT, 위 자료 29쪽 ~ 30쪽.

위해 USAID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USAID는 베트남 입법조사 프로그램(LRP – Vietnam Legislative Research Program)[37]을 개설하여 2013년 3월까지 18개월 동안 이를 운영하였다. LRP는 (1) 입법연구소의 발전을 위한 5개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2) 입법연구소의 연구품질, 시의적절성 및 연구주제 적절성, 그리고 연구 분석 능력을 개선하고, (3) 입법연구소 연구원의 능력과 전문성을 함양하고, (4) 입법연구소의 조직 관리능력을 향상하는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다[38].

LRP는 입법연구소의 시의적절한 연구결과 제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연구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질의요청에 대한 회신소요기간을 측정하는 방법도 활용하였다. 또 LRP는 입법연구소를 도와 국가예산기획 및 탈중앙집권화 등 여러 주제에 관한 심포지엄을 6회 개최하였고, 공청회 개최 방법 및 입법연구관리 등에 관한 주제로 세미나를 14회 개최하였고, 연구자료 확보를 위한 인터넷 검색방법과 커뮤니케이션 및 프레젠테이션 능력 개선방법에 관한 워크숍을 6회 개최하였다. 기타 LRP는 입법연구소 관리자들을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책분석 및 입법연구에 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였다[39].

제4절 물리적 시설 지원

물리적 시설의 지원은 일반적으로 기관 역량 강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된다. 물리적 시설지원사업은, 간단하게는 사무환경을 구축하는 지원사업에서부터 의회 또는 정부의 현안을 널리 전파하고, 국민의 피드백을 수용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까지 포함된다. 특히 최근 모바일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소셜 네트워크(SNS)를 활용한 법제교류지원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37) 계약번호: DFD-I-00-05-00219-00; 시행기관:Chemonics International Inc.
38) USAID, USAID/Vietnam Legislative Research Program - Final Report, March 2013, 1쪽
39) USAID, 위 자료 3~4쪽.

1. 과테말라 의회 홈페이지 개설지원

USAID는 과테말라 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테말라 의회 홈페이지 수정 프로젝트[40]를 진행하였다. 시행기관은 새로운 홈페이지에 의회 구조에 관한 자료, 주요정당에 관한 정보, 입법 절차에 관한 정보, 주요 인사에 대한 정보, 의원소개자료, 의회 조직도, 의회발간자료, 사용자를 위한 인터액티브 도구 등을 담았다. 특히, 인터액티브 도구 중 하나인 온라인 국민가이드(Online Citizen Attention Guide)는 국민의 정보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의정활동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일반 대중에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온라인 국민가이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의정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소통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41].

2. 베트남 온라인 간행물 소프트웨어 제공

미국은 베트남을 세계 경제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STAR 플러스 프로젝트(Support for Trade Acceleration Plus)[42]를 추진하였다. STAR 플러스 프로젝트의 일부로 추진된 온라인 간행물(E-Gazette) 소프트웨어 제공 사업은, 베트남 현행 법령을 국민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베트남 지방정부 30곳이 현재 온라인 간행물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법령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간행물 서비스의 성공에 힘입어 베트남 정부는 정부부처가 관리하는 모든 규범자료를 법제화하는 시행령을 시행하기도 하였다[43].

40) 계약번호: 520-O-00-05-00125-00, 시행기관: SUNY/CID
41) USAID, Legislative Assistance Activity Guatemala - Final Report, September 2005, 5~6쪽.
42) 계약번호: EEM-I-00-07-00009-00; 시행기관: DAI/Nathan Group LLC.
43) USAID, USAID/Vietnam Support For Trade Acceleration Plus (Star Plus) Final Report, August 2013, 1~5쪽

제3장 평가와 시사점

법제교류는 가시적인 성과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 원조사업이다. 기관과 인적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장시간 소요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관 또는 개별 구성원이 대상국의 경제 발전 또는 민주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지원 사업 추진한 결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인지 쉽게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 한편 관련 법령 구축사업의 경우에는 법률안이 도출되어 최종적으로 공포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논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법을 구축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경제를 개발하거나, 사법정의를 실현하거나,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경제성장과 사법정의와 민주화는 다양한 요소가 개입되는 사회적 현상이다. 따라서 가사 대상국에 최초에 의도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난다 하여도 그것이 올바른 법령의 구축 결과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각종 입법관련 기관 등을 구축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을 개설하는 사업 역시 이와 유사한 어려움이 있다.

법제교류지원사업은 가시적 성과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사전 기획이 더욱 중요하다. 대상국의 보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 설비를 개선하는 원조사업 등은 사전 기획이 잘못되어도 프로젝트 수행 도중 그 오류를 확인하고 바로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류가 눈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변경된 계획에 대한 대상국 정부의 공감을 끌어내기도 쉽다. 반면 법제교류지원사업은 먼 미래가 되어야 성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방향을 중도에 변경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제교류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그 만큼 중요하다. 더 나아가 법제교류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대상국 정부기관의 공감을 미리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과가 곧바

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상국 정부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프로젝트는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대상국 정부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어야 가시적인 성과가 곧장 나타나지 않는 법제교류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44].

44) 유사한 의견으로 USAID/Vietnam Legislative Research Program - Final Report, 37~39쪽.

참고문헌

EPRC Project/Chemonics International Inc., Development of Mortgage Securities Laws, July 2007

NLCIFT, Mexico Trade Capacity Building Project – Enhancement Of The Business And Legal Environment And Trade Capacity Through Legal Reform And Improvements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By Commercial Courts In Mexico, 2013

USAID, Afghanistan Parliamentary Assistance Program (APAP), April 2013

USAID, Building a Market Economy in Mongolia – Final Report of the Economic Policy Reform and Competitiveness Project, June 2011

USAID, Draft Tourism Laws Gilgit-Baltistan, October 2013

USAID, Final Report: Iraq Legislative Strengthening Program, March 2012

USAID, Freedom To Farm: Agricultural Land Use, Crop Selection, Fallowing, And Recommended Changes To The Farmland Law To Strengthen Land Tenure Security, August 2017

USAID, Improving Justice Service Delivery And Sector Reform In Haiti (Projustice), July 2016

USAID, Legislative Assistance Activity Guatemala - Final Report, September 2005

USAID, Ukraine Commercial Law Project, May 2008

USAID, USAID Strategy on Democracy Human Rights and Governance, June 2013

USAID, USAID/Vietnam Legislative Research Program - Final Report, March 2013

USAID, USAID/Vietnam Support For Trade Acceleration Plus (Star Plus) Final Report, August 2013

USAID, User's Guide to Democracy, Human Rights and Governance Programming, January 2017

USAID, The Development Response to Violent Extremism and Insurgency: Putting Principles into Practice 2011

Land Tenure Project, https://www.land-links.org/usaid-land-projects/

U.S. Foreign Assistance Data Tool, http://www.foreignassistance.gov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일본의 법제교류지원사업 현황

강 창 보
(제주국제대학교 강사)

제1장 개 관
제2장 담당기관별 법정비지원사업 현황 및 내용
제3장 평가와 시사점

제1장 개 관

국제협력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통치기구와 행정능력제도 등에 중심을 두고 있다.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범위·내용은 다양하지만, 거버넌스는 개발도상국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고 또는 개발원조의 효과와 효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또는 개발원조 등을 통해 실현되어야 가치·상태인 관점에서 개발원조에서도 개발도상국의 거버넌스 관점이 중시되게 되어왔다.[1)]

1996년에는 새로운 개발전략 「21세기를 향해: 개발협력을 통한 공헌」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보장과 법의지배 등 수치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요소를 개발전략에 포함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거버넌스 향상을 위해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설명책임과 투명성이 높고 참가형사회의 실현에 공헌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2000년 유엔밀레니엄정상회의에서는 채택된 「유엔밀레니엄선언」에서는 법규 및 발전과 권리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에 의지를 표명했다. 그 일환으로 민주주의 및 소수자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존중의 원칙과 실천을 실시하는 모든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결의하고 있다.

2005년에는 코피아난유엔사무총장 활동의 기둥인 개발·안전·인권의 밀접한 관련성을 감안하여 유엔의 모든 활동에서 인권의 관점을 강화하는 생각(인권의 주류화)을 제창하고 유엔세계인권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유엔인권이사회에 개편과 「유엔

1) 日本外務省; http://www.mofa.go.jp/mofaj/index.html

민주주의기본(UNDEF)」 설립 등 인권·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유엔의 노력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지원에 충실하기 위해서 파견되는 전문가는 물론, 법제도정비지원에 종사자가 적당한 인재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인력의 활용과 육성을 위한 기반정비를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구체적인 지원의 실시 등에 대해서는 외무성, 법무성 등 관계부처의 연계는 물론 정부와 일본변호사연합회, 경제단체 등 관계자 및 대학 등 관계자 사이의 민관협력이 필수적이고 지속적으로 법무성·JICA 주최의 '법률지원연락회' 등의 기존의 틀을 활용하면서 구체적인 민관협력에 의한 지원책에 대하여 검토하고 'all Japan'이라는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일본의 원조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다른 기증자와의 역할분담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연계기관과도 연결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2)]

2) 株式会社三菱総合研究所 「平成26年度外務省ODA評価 法制度整備支援の評価 (第三者評価) 報告書」, 2015.2, 125面.

제2장 담당기관별 법정비지원사업 현황 및 내용

제1절 관련법 구축

법제도정비지원의 실시체제에 있어서 일본의 법제도정비지원의 특징을 살려, 상대국의 요구·안건에 따라 전문가의 파견과 학자 및 법률실무자제도 운용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조직에서 지원방안을 돌출하고 연수유학생유입, 개발정책차관에 의한 상대국의 제도·정책개선,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등의 다양한 방법을 조합 또한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유연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1)]

일본이 정책으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의 8개국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일본기업의 원활한 활동과 법의 지배에 기초한 건전한 거버넌스 관리 분야에서도 확립을 위해 협력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향후 민주화의 촉진, 법치의 정착, 평화구축 지원, 투자환경정비, 민관연계 등 관점으로부터 8개국 이외 네팔, 동티모르 등 아시아국가와 아프리카 여러 국가 등에 대해서도 상대국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지원의 수요를 더욱 확대 해 나가고 있다.[2)]

법·사법제도정비[3)]는 JICA가 1996년 이후 시장경제화를 위한 법제도의 구성, 구축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게 되는 국가 또는 분쟁종결국가의 법·사법제도의 재구축·인재육성에 대한 지원을 일본의 법조기관 관계자의 협력을 얻으면서 “Peer to Peer(동료협력)”에 의한

1) 日本外務省; http://www.mofa.go.jp/mofaj/gaiko/oda/bunya/governance/hoshin_1305.html
2) 株式会社三菱総合研究所, 前掲報告書, 126-130面.
3) JICA 홈페이지; https://www.jica.go.jp/about/report/2015/ku57pq00001qc1md-att/37.pdf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질 높은 성장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경제사회 활동의 기초에서 두고 있다. 이러한 자조노력을 통해 국가발전의 토대는 경제사회기반의 정비와 함께, 법치의 확립, 좋은 거버넌스의 실현은 민주화의 촉진과 정착에 따른, 여성의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이 핵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의 정비나 법조 교정을 포함한 사법관계자의 육성 등의 법제도정비지원, 개선 등의 인재육성을 포함한 법지원제도 정비지원이 대부부의 국가들의 필요한 현실이다.[4)]

제2절 기관 역량강화

법운용 조직의 있어서 기능강화지원은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는 법무행정기능의 개선이고, 둘째는 개별법령을 소관하는 각종 관할관청의 이해촉진과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셋째는 법원이나 ADR 등의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전체의 규칙정비를 전제로 하고, 인재육성의 성과에 따라 효과가 좌우되는 것인데 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도구로서의 법자체가 정비되어 있어야하며 조직을 담당하는 능력을 가진 인재와 기관의 역량이 중요하다.[5)]

행정·공공재정·금융은 한나라의 정책형성과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기초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지원에는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충분히 주의하고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혁과정을 부담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6)]. 행정은 공공부문의 서비스개선(방글라데시, 가나) 주민에 비익익공공서비스사업의 제공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수립능력의 강화(부탄, 탄자니아, 온두라스 등 8개국)에 종사하고 있다. 캄보디아 경우 인구·경제센서스 등 통계조사의 필요한 기술과 지식

4) 2016年版　開発協力白書, 81面.
5) 株式会社三菱総合研究所, 前掲報告書, 93-95面.
6) JICA 홈페이지; https://www.jica.go.jp/about/report/2015/ku57pq00001qc1md-att/37.pdf

을 이전하고 통계국과 국가계획기관 직원의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경우 공무원을 한 교육과정을 종합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 : TQM)를 도입하고 일상 업무개선에 연결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14년 12월「카이젠 국제대회」가 수도 다카에서 개최된 '업무개선'에 관한 발표는 큰 성과를 거뒀다.[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고 있는 채권국보고시스템(CRS)에서 공표되는 2000-2013년의「법제사법개혁지원(Legal and Judicial Development)'의 원조를 지역별로 집계한 결과, 남아시아·중앙아시아가 가장 많았고, 동남아시아가 그 다음이다. 중앙아시아가 특히 많아지고 있는 것은 일본의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민주화지원으로 CRS가 정의하고 있는 법제사법개혁지원에 많이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CRS가 정의 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을 위한「법제사법개혁지원」에 대해서는 주로 치안유지활동이기 때문에 통계실적의 대부분이 1,2위로 평가에 해당하는 지원으로 보여지고 또한, 국가별로 보면, 캄보디아, 베트남에 대한 원조가 증가하고 있다.[8)]

7) JJACA,「国際協力機構年次報告書」, 2016. 107面.; https://www.jica.go.jp/about/report/2015/ku57pq00001qc1md-att/37.pdf

8) (株)三菱総合研究所, 前掲報告書, 41面.; CRS는 '사법 분야의 제도시스템 운영에 관한지원, 법무부·행정안전 관련성을 위한지원, 법원을 위한지원, 설계도지원 변호사회를 위한지원, 법조교육지원 법정비전반에 관한지원, 국경관리지원, 법률 집행기관·경찰과 감독기관지원, 옴부즈맨지원, 분쟁해결(중재·화해 등)에 관한지원, 법률에 관한지원 및 기타법제도에서 제외자리 매김하고 있다. 전통적인 지역고유의 보조적인제도를 위한지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법제도정비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다.

JICA의 주요한 법정비지원사업의 추이

JICA산업개발 · 공공정책부 법·사법팀 2016년 2월 1일 (현재)[9)]

국가명	안건명	계획	기간		협력개요
			시작	종료	
베트남	2020년 목표-법 사법개혁 지원프로젝트	기술협력 프로젝트	2015. 04.01	2020. 03.31	- 일본의 법제도 소개 민상사법률 분야의 기초(민법, 민사소송법 등), 법조 인재육성(법조인 양성) - 베트남 법무, 사법관계기관(법무부, 수상부 관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베트남 변호사연합회)에서, 베트남의 2013년 헌법과 2020년을 목표로 한 법·사법개혁의 취지에 따라 법규범 문서의 심사능력강화, 법규범 문서초안, 그리고 법규범문서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한 조언과 지도능력 및 재판집행실무능력 향상을 지원
캄보디아	민법·민사 소송법 보급프로젝트	기술협력 프로젝트	2012. 04.01	2017. 03.31	민법·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의 정착을 위한 법무부왕립사법학원, 변호사회, 왕립법과경제대학의 인재육성법 민사운용능력지원 민법관련 부동산공동성령(不動産公同省令)의 기초·보급 지원
라오스	법률 인재육성 강화 프로젝트 2단계	기술협력 프로젝트	2014. 7.11	2018. 7.10	라오스법무 사법관계기관, 법학교육 기관 및 그 소속 직원·교원 (1) 법령의 초안 (2) 법령의 운용·집행, (3)법학교육·법조 등 연수 (4) 법령의 보급·이해 촉진을 개선하는 작업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라오스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입법·법률 운용·집행 및 공무원 및 일반 시민의 법제도에 대한 액세스 향상을 지원
중국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민생의 보장을 위한 법제도정비 프로젝트	기술협력 프로젝트	2014. 6.25	2017. 6.24	일본의 입법 경험을 참고로 한 질 높고 유효하게 실시 할 수 있는 중국의 경제, 사회분야의 법률제정·개정 작업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일본의 관련법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성과를 가지고 일본의 입법과정과 입법 후 평가(정책평가) 경험에 관한 연구 성과를 모아 종합지원

9) JICAの主要な法整備支援事業の推移 http://gwweb.jica.go.jp/km/FSubject0401.nsf/3b8a2d403517ae4549256f2d002e1dcc/172563f227bf87c449257bc60010b4bb/$FILE/%E3%80%90%E6%9C%80%E6%96%B0%E7%89%88%E3%80%9120161201%20%E6%B3%95%E6%95%B4%E5%82%99%E6%A1%88%E4%BB%B6%E3%83%AA%E3%82%B9%E3%83%88%EF%BC%88%E5%92%8C%E6%96%87%EF%BC%89.pdf

국명	안건명	계획	기간		협력개요
			개시	종료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법적 일관성 향상 프로젝트	기술협력 프로젝트	2015. 12.21	2020. 12.20	법무인권성 지적재산권 총국에 의한 지적재산권 심사의 질 향상, 국가 및 지적재산권 집행에 따라 집행단속체제의 향상 대법원에 의한 지적재산권 사건의 처리의 예측가능성 향상 및 법무인권성 법규총국에 의한 사업관련 법령(지적재산권법을 포함)의 기초·심사에 있어서 법적일관성 향상을 지원
네팔	법률지원 자문	개별 전문가	2015. 09.01	2017. 08.31	네팔 대법원에 의한 제3차 5개년 사법전략계획 등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실시 및 민법의 입법· 보급지원 등을 실시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한 법원역량 강화프로젝트	기술협력 프로젝트	2013. 09.16	2017. 09.30	법원의 사건관리제도 개선 및 사법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의 촉진을 통한 법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기능을 향상
미얀마	법정비지원 프로젝트	기술협력 프로젝트	2013. 11.22	2018. 05.31	법무장관부 법안심사 및 법률자문 능력의 향상 및 대법원의 법률정보의 조사 및 법안작성능력의 향상을 포함하여 양 기관의 입법실무 능력의 향상, 인재육성 지원강화
이란	법제도 정비 3단계	기술협력 프로젝트	2013	2015	일본의 사법제도, 사법인재육성제도의 소개
코트디부아르	사법고문	개별 전문가	2014. 12.8	2017. 03.31	사법 인력의 형사사법에 관한 능력이 강화됨에 따라, 불처벌되는 건과 인적기반이 정비되는 것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
	불어권 아프리카형사 사법연수	제3국 연수	2015. 4.1	2018. 03.31	코트디부아르외에도 콩고민,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말리, 차드, 세네갈, 모리타니에서 형사사법관계자(경찰관, 사법 등)을 코트디부아르에 대하여 UNAFEI 등의 협력을 얻어 형사사법분야의 연수를 실시

출처 : JICA 홈페이지. * 현재 진행 중인 사업만 기록함.

제3절 인적 역량강화

인재육성은[10] 적절한 품질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의한 인재육성은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빈곤문제의 해결에 필수적이다. 빈곤국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태국처럼 일정한 경제

10) 2016年版　開発協力白書, 13面.; http://www.mofa.go.jp/mofaj/gaiko/oda/files/000239466.pdf

성장을 이룬 나라에서도 「중 소득 국가의 함정」[11]에 빠지지 않도록 생산성향상과 혁신을 촉진하는 인재의 육성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인재육성분야는 중요한 과제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실로 다양한 활동을 ODA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국의 경제발전단계에 맞는 인재육성 필요에 따라 이수학과 등의 기초교육과 공학고등교육의 확충뿐만 아니라, 기술자, 엔지니어, 연구개발, 경영인재, 산업정책 수립을 담당행정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각 개발도상국이나 지역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일본에서의 연수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그 하나가 일본의 대학원에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재육성장학계획(JDS)[12]에서 매년 약10개국에서 총200여명의 젊은 행정관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의 대학원에서 조국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지식을 심화하고 있다.

더욱더 행정관과 교원, 연구자뿐만 아니라 유망사업가도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교육사업도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에서의 연수기회의 제공은 귀국 후에 그들이 일본의 좋은 이해자로서 활약하는 것에도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일본기업이 아프리카에서 경제활동을 진행할 때 졸업생들과 협력할 수 있을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과거에도 실제로 JICA가 실시한 베트남 하노이대학의 IT분야 교육역량강화 프로젝트에서 방일한 연수생이 귀국 후 일본유학대학의 이름을 딴 회사를 창업해 일본과 베트남의 IT업계의 중개인력과 관계된 사례가 있다.

2016년 6월에 각의 결정된 「일본재흥전략2016」에 외무성·JICA는 「혁신적인 아시아」[13]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아시아개발도상국 등의 우수한 인재가 일본기업 등으로 취업 일본의 혁신에 공헌 할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자국의 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급 인재의 육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ODA 등을 활용하는 것이

11) '중 소득 국가의 함정'이라는 것은 일정수준의 소득수준을 획득한 국가의 소득과 개발의 진척은 인건비상승과 후발국의 추격 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침체해 버리는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12) 인재육성장학계획 JDS : Project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Scholarship

13) イノベーティブ・アジア (Innovative Asia)

며, 첫 번째로 ASEAN국가와 인도, 스리랑카 등 아시아 14개국의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일본의 대학원과 연구기관에서 배우고, 기업 등에서 인턴쉽을 체험 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5년간 총 1,000명의 과학기술연구에 종사하는 우수한 학생을 일본에 부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외국인 학생이 일본국내에서 일정기간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채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우선조취 '고도의 인재포인트제'의 특별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파견되는 전문가는 물론, 법제도정비지원에 종사하고 적당한 인재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인력의 활용과 육성을 위한 기반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지원의 실시 등에 대해서는, 외무성, 법무성 등 관계부처의 연계는 물론 정부와 일본변호사연합회, 경제단체 등 관계자 및 대학 등 관계자 사이의 민관협력이 필수적이면서 법무성·JICA 주최의 '법률지원연락회' 등을 활용하면서 구체적인 민관협력에 의한 지원책에 대한 검토하여 '올 재팬'의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일본의 원조지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다른 기증자와의 역할분담에 중점을 두고, 연구기관과도 연계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현지의 일본 측 대사관·JICA사무소와 현지에 파견된 전문가가 긴밀하게 연락하는 것을 통해 법제도정비지원 과정에서 형성된 인맥이 단절 없이 지원 후에도 현지 정보수집 등에 활용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2014년도는 중국과 라오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기본법의 정비 및 체계적이고 일관된 법령의 초안운영을 위한 지원과 비즈니스 환경정비에 직결되는 법정비지원에 주력했다. 베트남에서는 공동 이니아티부 등의 한층 더 제휴를 도모하면서, 2015년도부터 차기협력을 위한 조사 등을 실시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지적재산권법을 포함한 비즈니스 관련법령의 초안·심사의 향상과 지적재산권보호 체제강화를 목표로 프로젝트수행을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아프리카에 대해서도 이니셔티브나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설정을 위한 논의에 입각하여 2014년 12월부터 코트디부아르 법무부에 사법고문

을 새로 파견하여 사법접근의 개선과 형사사법 분야의 인재육성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14)]

(1) 인도네시아

일본은 향후 원활한 경제활동의 기축이 되는 기본 실체법령, 절차법령의 개정이나 필요한 입법조치 및 지침의 정비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법정비와 관련한 지원이 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건전한 지배구조의 기초가 되는 사법 분야에 대해 인도네시아 측 자체의 노력과 협력요구를 감안하여 인재육성을 중심으로 한층 더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실시해 온 경제법정비·운용관계에서는 지적재산권 및 경쟁법에 관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선거지원이나 경찰지원 등의 거버넌스 지원에서도 일본의 지원에 대한 충분히 효과를 올리고 있다. 또한 일본의 개발정책 차관을 통해서도 투자·사업 환경정비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 운용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의 관점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투자 촉진과 일본 기업보호의 관점에서도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운용 개선할 필요성은 여전히 높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법제도 정비 분야는 다른 기증자 많은 협력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원조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다른 기증자와의 역할분담에 유의하면서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협력에 주력하고 지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세무, 노동법률, 소송의 절차 등 민간의 사업 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법제도정비와 그 투명하고 적정한 운용이 과제라는 인식하에 일본이 지적재산권법 및 경쟁법과 관련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실시 가이드라인의 책정지원, 인재육성 등 조직 강화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법에 대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과 동시에, 거버넌스 개혁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경찰을 민주적인 조직으로 가기

14) JICA 홈페이지; https://www.jica.go.jp/about/report/2015/ku57pq00001qc1md-att/37.pdf

위한 국가경찰지원과 대법원에 대한 조정제도 관련제도정비 등을 지원도 하고 있다.

(2) 베트남

일본은 베트남이 경제성장 촉진 및 국제경쟁력강화, 사회생활면의 향상과 격차시정 및 환경보전의 각 개발과제에 대응하는데 있어서의 건전한 거버넌스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민법, 민사소송법등 각종법률의 제정에 대한 지원과 금융, 중소기업, 투자환경정비 등에 관한 정책자문,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지적재산권 집행에 해당하는 인재육성에 대한 지원 등의 경제법분야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기본법 분야에서는 베트남의 변화되는 문제점에 맞추어 기초지원을 포함한 법의 적정한 운용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사법제도의 정비 및 지방을 포함한 법조·법률직 등의 인재육성에 지원하면서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또한, 베트남법령의 제정 및 집행·운용의 개선이라는 과제인 측면에서의 개선은 자국의 법규에 따라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일본의 기업 활동을 원활하기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있다. 베트남 법률지원의 특징은 기술협력을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 활동에 대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법령의 제정 및 집행과 운영상의 개선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베트남은 자신이 정하고 있는 법제도정비전략 및 사법개혁전략과의 적합성에 유념하면서, 법률의 운용 면에서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인재육성 등을 통한 입법능력강화 및 법률실시체제 강화하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투자환경개선, 공공사업 등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투자촉진정책과 시책을 담당하는 부처, 공공조달 부서에 통보함과 동시에 최근 시장경제화의 진전에 따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보호분야(PPP민관협력), 환경·에너지관련 제도정비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15]

15) 법원, 검찰원, 행정부(지방포함)에서는 능력강화, 변호사회의 조직 강화 등, 경제법 관련분야에서는 세관, 세무, 세제, 경쟁법, 금융, 지적재산권법을 하고, 기준인증분야에서 관계부서 직원의 능력향상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3) 미얀마

일본은 미얀마의 민주화와 사회·경제 개혁을 밀어주기 위하여 그 기반조성에 이바지하면서 법제도정비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일본기업의 경제활동 기반정비에도 민상사법률, 금융, 세관행정을 포함한 경제법 분야 등을 기본으로 하면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기초능력강화와 인재육성도 시야에 넣은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정부에 우선순위를 확인 할 필요가 있지만, 기준인증, 투자환경정비, 지적재산권, 공공사업 등의 원활한 실시에 이바지하는 법정비 등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이러한 지원의 가능성도 검토하고 또한, 미얀마 측의 요구와 지원 실적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지배구조강화를 비롯한 사법 분야에서 포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미얀마에서 '법의 지배'의 확립을 목표로 자유와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협력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2011년 새 정부출범 이후 민주화추진, 시장경제화의 촉진을 표명하고 정치, 경제, 사회개발의 각 분야에서 가속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진행되는 전제로, 미얀마에서는 법치의 확립과 지배구조의 개선 도시성장과 경제에 부합하는 법령의 정비와 법령을 공포·공표하여 투자와 비즈니스를 전개하는데 있어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향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4) 몽골

일본은 몽골정부의 시장경제에 관한 제도정비와 인재육성에 대한 지원으로서 조정제도의 정비, 세제의 정비와 징세능력의 강화, 재무행정관리능력, 정책입안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면서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시장경제화의 진전과 국제경제활동의 활성화에 주력하는 반면에, 외국기업에 불리한 법령해석이나 판단을 하는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어 시민이나 기업의 권리보장과 분쟁 해결수단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사법제도 및 관련기관의 기능강화와 인재육성이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일본의 지원으로 조정법이 성립한 것을 받아들였고 앞으로 법조인재의 육

성과 법제도가 기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조정제도의 전국도입에 대하여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5) 캄보디아

일본은 캄보디아정부가 추진하는 제반개혁의 성공을 위한 지원으로 세관, 세무 등에 관한 협력의 실시에 추가하여 민법· 민사 소송법의 기초·성립지원과 판사·검사 양성교육에서 조직적인 학교운영 법교육의 노하우 이전 등 인재육성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의 인재육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활용을 통해 협력해왔다. 민사 분야에 초점을 맞춘 일본이 지원한 캄보디아 새로운 민법·민사소송법의 운용을 지원하는 변호사, 사법공무원, 대학 강사 등의 핵심인재의 육성과 실무교육을 한층 더 충실한 사법관계기관의 조직 강화를 위해 더욱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집행의 관점에서 세무행정 세관행정의 근대화를 향한 지원과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협력을 통해서 민법, 민사소송법[16] 및 관련법령이 완성시키는 등 중요한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미래에는 그 적절한 운용의 확보 등 민사 분야의 지원요구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고, 각 부처가 초안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내부에서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2016년부터 세계은행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토지의 등기 및 소유권인증서 등의 지원되고 있다. 캄보디아 토지는 내전으로 현재 소유권이 확정된 것은 절반정도인 것에 감안하면 입본이 지원하는 부동산등기법(토지의 매매 ·상속 또는 담보설정 등의 거래를 등기부에 반영시키기 위한 절차법)의 적용의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ADB는 상업성에 대해 서로 금융부문지원으로 상사계약법, 소비자보호법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이 지원하고 있는 민사법률 및 토지제도와의 정합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17]

16) 캄보디아의 법제도정비지원 사업은 민법·민사소송법 개선프로젝트의 실시계약은 2017년 2월 10일하고 협력기간을 2017년 4월 1일 ~ 2022년 3월 31일까지 계획하고 있다.

17) JICA법정비지원포털사이트[2017.06.08.업데이트] http://gwweb.jica.go.jp/km/FSubject0401.nsf/3b8a2d403517ae4549256f 2d002e1dcc/82defb180cfaf65d49257bc5002cef9f?OpenDocument& TableRow=8.1.1.2#8.1.1.

(6) 라오스

일본은 라오스가 건전한 경제발전, ASEAN이 진행하는 지역경제통합과 연계성강화, 국내격차를 줄이기 위한 관점에서 법제도정비를 위한 기반조성·인재육성, 사법제도강화 등 법제도의 신뢰향상을 위해 민법전 초안과 인재육성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일본은 사법관계기관 및 대학 등의 법교육·연구기관의 인재육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실무의 개선을 목표와 함께 라오스에 진출 해있는 일본계 기업에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라오스 투자환경정비에 관한 법제정비지원을 라오스정부의 원조 수용태세를 감안하면서 검토하고 있다. 또한 법령집행에 관해서는 세관행정에 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것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협력을 통해 민법전 초안이 진행되고 있으며, 라오스의 사법관계기관 및 대학 등의 법교육·연구기관의 인력이 꾸준히 육성되고 있다.

또한 JICA의 법률지원은 2014년 12월 12일 도쿄에서 개최된 UNAFEI기관들과의 문서교환 및 재발행을 위한 교부와 실질적인 입법 및 균일한 적용을 위한 프로젝트 2020년 목표로 법과 사법의 발전을 지원계획하고 있다.[18]

(7) 우즈베키스탄

일본은 우즈베키스탄이 꾸준히 경제·사회개혁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구조개혁에 따른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원조를 경제 성장의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별 지원정책에도 시장경제화의 촉진과 경제·산업진흥을 위한 인재육성제도 구축과 지원을 원조중점분야의 하나로 하고 있다. 향후 행정절차법령의 개정법령의 데이터베이스의 정비와 '주석서의 작성' 등에 관한 지금까지의 일본의 협력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일본의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분야를 신중하게 파악하면서 협력의 실시여부와 법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한 인재육성에 대해서도 지원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18) JICA법정비지원 홈페이지; : http://gwweb.jica.go.jp/km/FSubject0401.nsf/3b8a2d403517ae4549256f2d002e1dcc/172563f227bf87c449257bc60010b4bb/$FILE/Rapport%20des%20Seminaires_2014-2015.pdf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각종 법령간의 불일치와 법해석의 불일치 등에 의해 법령의 원활한 집행·운용을 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민간부문의 발전과 무역, 외국인투자촉진 등 필요한 비즈니스 환경의 정비를 주요목적으로 법제도, 세무, 인재육성 등의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

(8) 방글라데시

일본은 방글라데시에 대한 지속가능한 포섭 경제성장의 가속화와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라는 개발과제에 임하면서 기본으로는 건전한 거버넌스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기능의 강화와 행정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도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방글라데시에 대한 법제도정비지원이라는 관점에서 행정능력강화를 중심으로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지만, 향후는 경제법 등 분야의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최근 새로운 생산거점과 거대한 시장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어 일본기업의 진출도 확대하고 있다. 한편, 방글라데시는 투자에 있어서의 법제면 등이 일본계기업의 투자확대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이면에서의 개선은 자국의 법규에 따라 거버넌스의 확립을 위해 필요함과 동시에 일본기업 활동촉진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19]

제4절 물리적 시설 지원

물리적 지원시설은 국가별 각기 다른 형태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캄보디아의 경우 수집된 판결 중 공개대상으로 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공개에 필요한 처리를 하고 있다. 필요한 처리를 한 판결에 대해 웹사이트에 게재하거나 판결집의 발간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수집된 판결 중 분석대상으로 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의 질 개선을 위해 수

19) 株式会社三菱総合研究所, 前掲報告書, 129面.

집 한 판결내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와 전문지 등으로 공유한다.

이에 대한 캄보디아 측을 살펴보면 카운터 파트의 배치에서는 프로젝트 총괄이 사법장관이 프로젝트매니저는 법무부차관이 맡으며 국토정비·도시화·건설성, 대법원, 항소법원, 왕립사법학원, 변호사회, 왕립법률경제대학에서 선임되는 워킹그룹회원 시설제공(프로젝트사무실 워킹루프회장 등)하고,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서식 예를 검토하는 워킹그룹(WG)회원[20]이 전단계의 멤버였던 실무자(판사, 변호사 등)이 포함 되는 등 적절한 회원이 선임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측 투입인원은 전문가파견은 총 240명 중 장기전문가 총괄 민법이론 민사실무 업무조정, 단기전문가 파견(부동산등기법 서식 예제작성 판결 공개 등)·연수원수용(부동산등기법 서식 예제 작성 판결 공개 등)·기자재 공여(판결공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등) 파견하고 있다.

JICA 법정비지원 활동상황

프로젝트명	기 간
변호사회 사법지원 프로젝트	2007/06 ~ 2010/06
판사검사 양성교육 민사교육 개선프로젝트	2005/11 ~ 2008/03
판사검사 양성교육 민사교육 개선사업(2단계)	2008/04 ~ 2012/03
법제도정비 프로젝트	1999/03 ~ 2003/03
법제도정비사업(2단계)	2004/04 ~ 2008/04
법제도정비사업(3단계)	2008/04 ~ 2012/03
민법·민사소송법 보급프로젝트	2012/04 ~ 2017/03
민법·민사소송법운용 개선프로젝트	2017/04 ~ 2022/03

JICA 법정비지원에 관한 포털사이트 2017.07.21.【업데이트】[21]

20) 캄보디아 측 부동산등기법 초안 약20명, 서식정비 30명 판결 공개분석 약20명으로 구성되었다.

21) http://gwweb.jica.go.jp/km/FSubject0401.nsf/3b8a2d403517ae4549256f2d002e1dcc/82defb180cfaf65d49257bc5002

JICA의 활동을 보더라도 시설지원을 함으로써 지원받는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법정비지원에 있어서도 금융 분야와 병행하는 것이 필요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민간부문개발을 지원하는 중요한 '소프트인프라'이다. 최근 협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JICA의 지원도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도 일본의 경험도 활용하여 경제 분야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국영기업개혁과 은행의 부실채권처리문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얀마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자금결제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은행 간 시장육성과 증권거래시장의 정비에 관한 지원 등 금융근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몽골에서도 자본시장정비를 위한 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단지 법지원에만 국한하기 보다는 포괄적인 물리적 시설지원에도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22]

cef9f?OpenDocument&TableRow=8.1.1.0#8.1.1.; 일본이외의 나라에서 캄보디아에 원조한 것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형사 분야의 법령초안을 지원해왔으며, 최근에는 토지관리에 관한 인재육성을 지원하고 있고, 왕립법률경제대학에 있는 고문을 코디네이터로 사법관계자의 육성·공동연구를 소규모로 하면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토지법제 관련분야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이하 "ADB") 세계은행, 핀란드정부, 독일국제협력공사 등이 국토정비·도시화·건설부에 "Land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Project(2003-2007, 2008-2013)'를 통해 토지법규를 제정, 토지등기 및 토지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 토지정책 입안·실시 등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중단 또는 종료했다.

22) JACA,「国際協力機構年次報告書」, 2016. 107面.; https://www.jica.go.jp/about/report/2015/ku57pq00001qc1md-att/37.pdf

제3장 평가와 시사점

세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상호간 영향과 의존의 정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빈곤과 분쟁, 인권억압, 감염이나 환경문제 등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관한 것으로서 협력하여 대처해야 할 위협 과제도 많아지고 있다. 일본은 자유롭고 풍요롭고 안정된 국제사회의 실현을 위해 ODA는 전략적이면서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면서 개발지원 및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23)]

일본의 ODA가 지난 수 십 년간 국제규범을 상당부분 수용하면서 변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변화의 지침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ODA대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92년 ODA대강이 처음 책정된 이후 2003년과 2015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1992년 처음 대강이 책정될 때는 물론 그 이후의 변화는 일본이 ODA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국내외 환경과 정책결정자들의 외교안보 고려를 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본 ODA대강의 변화와 ODA수행실 자료를 통해, 일본이 국제규범을 수용하면서 ODA지원 대상 분야를 다양화하고, 국세사회의 인도주의 필요성을 잘 반영하고 있지만 자국의 이익과 연계한 기본적인 특성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쓰비시종합연구소가 작성한 평가보고서에서 외무성, JICA에 대한 직접적인 일본의 법제도정비지원관계자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본의 법제도정비지원관계자는 외무성·JICA에 머물지 않고, 법무성, 경제산업성, 재무성 및 문부과학성 등 다른 부처와 산업계, 대학, 변호사회, NGO 등 그 영향이 광범위하게 미치기 있다. 특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일본의 법제도정비지원의 효과를 높여나간다는 중장기적 관점

23) 日本外務省;, http://www.mofa.go.jp/mofaj/gaiko/tikyuu_kibo.html

에서 법제도정비지원 관계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제언은 ODA의 선도 기관으로 외무성・JICA의 권한과 책임은 관계자에게 주기적 관계자간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 구체화되길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더불어 경제나 국제정치에서 지역적으로 동남아시아의 지역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첫째, 일본의 ODA지원정책의 추구하는 방향에서의 차별화, 둘째, 지속적인 법정지원이 필요성, 셋째, 국가별 전문일력 양산의 필요성, 넷째, ODA정책 및 법제연구의 중요성, 다섯째, 민간과 기업의 인식변화의 중요성을 두고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제도정비지원 평가보고서」[24]에서는 첫 번째, 「최상위 정책입안 장소의 설치」 내용은 정책·전략의 방향성 수준의 제언이면서, 현재, 법제도정비지원정책수립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외무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관계주체도 많고 조정에 시간이 걸리는 점에서 중기적인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

두 번째, 「정책결정 권한을 갖는 수준에 법제도정비지원의 실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책·전략에 대한 방향성의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상대국 정부기관과의 조정도 필요한 것이며, 외무성뿐만 아니라, 현지의 일본대사관도 협력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고 상대국기관과의 조정 등도 필요하며, 중기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법률의 운용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원을 실시」에 대해서는 지원방법·지원절차수준이 원조실시기관인 JICA(본부·현지사무소)가 중심이 되어 대응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통의 기술협력뿐만 아니라, 일본이 가진 다른 원조구성표(예를 들어, 가능한 현지인 무상자금협력과 NGO지원)등의 활용을 계획하고 외무성이나 현지의 일본대사관의 대응도 필요하다. 또한 향후 법제도정비지원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24) 株式会社三菱総合研究所, 前掲報告書, 118面.

네 번째 「법·사법제도에 대한 액세스를 위한 대중적인 활동 강화」에 대해서도 지원방법·지원절차수준이 현지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대사관과 JICA현지사무소가 중심이 되어, JICA(본부·현지사무소)에서 실시하는 프로젝트와 협력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섯 번째 「다른 기증자·국제기관과의 연계강화」는 원조방법이나 지원 절차수준이 기본적으로 현장에 적합한 법제도정비지원에서 따른 국제기관과의 제휴는 매우 중요하다 점에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여섯 번째 「민간과의 연계를 통한 법제도의 운영단계에 대한 지원의 실시」는 정책과 전략의 방향성 제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본부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다. 본부 수준에서, 특히 실제원조사업의 실시를 담당하는 JICA본부가 일본변호사연합회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즉시 착수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다.

일곱 번째 「법제도정비지원에 의해 얻어진 자료의 적극적인 공개」에 대해서는 원조법·지원절차수준이 원조의 실시기관인 JICA(본부·현지사무소)에 의해 지원되는 것으로,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본은 장기전문가의 파견을 기반으로 한 기술협력에 의한 법제도정비지원을 다른 기증자와 비교한 점은 피 원조국을 중심으로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법제도정비 지원에 관한 정책은 일본의 ODA대강과 ODA중기정책, 외교정책도 일치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거버넌스의 개선 및 MDGs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원조의 방향성도 일치한다. 이러한 법제도정비 지원이 실시되어 온 나라에 있어서는 개발계획 등에 대해 사법개혁과 시장경제화, 경제활동을 위한 법제도정비의 중요성이 명기되어 있는 등 충분한 상대국의 요구에 따라 일본의 법제도정비지원이 계획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점은 배워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따른 제언의 분류 및 권고 사항의 내용과 해당기관에 타임프레임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경험을 하나하나 무단히 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교훈

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평가의 구조를 갖추고 투명성 있게 노력하면서, 시민사회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ODA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풍요로움을 가져다주고 각별한 환경·사회배려에 기준이나 부정을 방지하는 구조로 당사국과의 진실한 대화와 조정, 또한 세분화된 사업의 계속적인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계획과정에도 충실히 하고 있다. 차후에는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개발협력의 실시를 위해, 이 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바라보는 ODA에 대한 바른 인식과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ODA정책에 있어서 법제도정비지원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담당하는 정부와 이를 대행하는 JICA와 더불어 NGO가 체계적인 관계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단한 시너지효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 한국ODA가 가야할 방향에 주는 교훈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석수, “일본 정부개발원조(ODA)와 국익의 연계”, 「문화와 정치」 제3권 제1호, 2016.5,

박광동,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이념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8.9.

박광동, 「주요국가의 ODA법제연구 -총론 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2010.10.

이승주·이민정. “일본 환경ODA 정책의형성과변화: 외교정책 및 경제정책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제39권, 2014.

이정, 「주요국가의 ODA법제연구 -일본-」, 한국법제연구원, 2010.10.

정기숙, “동일본대지진 이후 정부개발원조 예산삭감을 둘러싼 일본사회 내의 갈등”, 「日本文化學報」第66輯, 2015.8.

정봉근・박환보. “일본교육 ODA 거버넌스의 특징과 시사점.” 「국제개발협력연구」 제5권 2호, 2013.

황병주, “법률문화교류사업의 내용과 향후 추진과제”,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국제적 법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한·일 법제협력사업 공동학술세미나, 한국법제연구원, 2007.10.13.

한승헌, 조희정, 강민아, “일본 ODA 정책결정체계의 통합과정에 나타난 정책변동 분석 - 옹호연합모형의 적용-,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학회, 2015.9.

株式会社三菱総合研究所, 「平成26年度外務省ODA評価　　法制度整備支援の評価（第三者評価）　報告書」, 2015.2.

外務省,「2016年版　開発協力白書」, 2017.3.

JACA,「国際協力機構年次報告書」,　2016.

竹原憲雄,「序章, 借款型ODAと日本型ODAと財政の国際化」, 日本型ODAと財政 ―構造と軌跡 ミネルヴァ書房, 2014.

内海愛子·村井吉敬,「第1章 戦争賠償からODA大国へ」『徹底検証ニッポンのODA』コモンズ, 2006.

国際開発センター,「東日本大震災への海外からの支援実績のレビュー調査」, 2013.

国際協力局「開発協力大綱の決定」, 外務省, 2015.2.

金子 由芳, “法整備支援における政策判断に資する立案·評価手法の検討”, 独立行政法人国際協力機構 国際協力総合研修所, 2006.8.

桑原尚子, “法整備支援における「法の移植(Legal transplants)」をめぐる議論の序論的考察：理論と実践の架橋をめざして”,「国際開発研究フォーラム」Vol.34, 名古屋大学, 2007.3.

竹下 守夫, “法整備支援の理念と課題”,「みんけん」No.596, 誌友会民事研修編集室, 2006.12.

佐々木雄太, “大学による国際協力の一例としてのアジア法整備支援”,「法律のひろば」, ぎょうせい, 54巻 10号, 2006.10.

杉浦一孝, “名古屋大学による法整備支援活動の概要”,「ICD NEWS」27号, 2006.6.

外務省

http://www.mofa.go.jp/mofaj/index.html

政府開発援助(ODA)

http://www.mofa.go.jp/mofaj/gaiko/oda/about/index.html

独立行政法人国際協力機構（JICA／ジャイカ）

https://www.jica.go.jp/about/index.html

外務省「法制度整備支援に関する基本方針（2013年5月改訂版）」

http://www.mofa.go.jp/mofaj/gaiko/oda/bunya/governance/hoshin_1305.html

法務省法務総合研究所国際協力部

http://www.moj.go.jp/housouken/houso_icd.html

日本弁護士連合会

http://www.nichibenren.or.jp/

国連アジア極東犯罪防止研修所（UNAFEI）

http://www.unafei.or.jp

公益財団法人国際民商事法センター

http://www.icclc.or.jp/

法務省「日本法令外国語訳データベースシステム」

http://www.japaneselawtranslation.go.jp/law/最高裁判所

http://www.courts.go.jp/

名古屋大学「法政国際教育協力研究センター（CALE）」

http://cale.law.nagoya-u.ac.jp/index.html

「日本法教育研究センター」

http://cjl.law.nagoya-u.ac.jp/

内閣法制局

http://www.clb.go.jp/

衆議院法制局

http://www.shugiin.go.jp/itdb_annai.nsf/html/statics/housei/html/h-toppage.html

参議院法制局

http://houseikyoku.sangiin.go.jp/index.htm

国立国会図書館「リサーチ・ナビ」

http://rnavi.ndl.go.jp/politics/index.php

電子政府総合窓口 e-gov（総務省行政管理局）,「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

http://law.e-gov.go.jp/cgi-bin/idxsearch.cgi

ジェトロ（JETRO）

http://www.jetro.go.jp/indexj.html

ベトナム司法省

http://vbqppl.moj.gov.vn/vbpq/en/pages/vbpq.aspx

モンゴル経済開発省外国投資規則・登録局

http://investmongolia.com/fiftanew/contents.php?id=6&sId=8&lang=Eng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중국의 법제교류지원사업 현황

백 영 주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실 위촉연구원)

제1장 개 관
제2장 담당기관별 법정비지원사업 현황 및 내용
제3장 평가와 시사점

제1장 개 관

중국에서 흔히 쓰이는 '법률원조(法律援助)'라는 단어는 기타 개도국에 대한 혹은 다른 국가로부터의 법률원조를 의미하기보다는, 중국정부에서 국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특별한 사안과 관련된 사람에게 무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법률보장제도를 의미한다. 중국은 본 자료집에서 함께 다루어질 다른 선진 공여국과는 달리 정부개발원조의 공여국인 동시에 해외의 지원을 받는 수원국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 법제교류지원 분야의 경우, 중국은 공여국의 입장이기보다는 기타 선진국들의 법제교류지원을 수용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중국에 대한 외국의 법제교류지원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중 중국의 입법체제 등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특히, 미국의 경우 상거래제도・기술관련 제도・금융제도 등 자국의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바탕으로 중국과 1983년부터 법제교류지원을 시행하였으며, 독일은 1980년대부터 중국에 대한 법제교류지원을 시작하여 2000년에는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과 "중・독의 법률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중・독 간 행정법, 민법, 상법, 노동 및 사회법, 사법집행의 개선과 공민권리보호, 경제범죄 및 횡령부패행위 방지 등에 관해 법제교류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

1) 양효령,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제교류지원 현황과 과제", 중국법연구, 제12집, 2009년 12월 pp.123-124

제2장 법정비지원사업 현황 및 내용

제1절 관련법 구축

1. 미국과의 법제협력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의 중국에 대한 법제교류지원 형식은 협정서 체결 혹은 합의서를 바탕으로 한 법제교류 혹은 대학, 연구원 등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한 학술적 교류의 형태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법제교류는 1997년 장쩌민 중국 주석이 클린턴 미대통령의 초청으로 방미하여 공동 발표한 <중미연합성명>를 통해 본격적으로 협력이 강화되었다. <중미연합성명> 중 법률협력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중국과 미국 양국은 법률협력추진이 양국의 이익과 수요에 부합한다고 여김.

양국은 국제조직범죄, 마약밀매, 불법이민, 화폐위조 및 돈세탁 등 범죄와의 전쟁에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위해 쌍방은 양국 정부 관할 부처 대표로 구성된 '법집행협력연합연락소조(执法合作联合联络小组)를 설립할 계획임. 양측은 상호 법률 지원협약을 위한 협상 개시에 동의함.

중미 양국은 동등한 입장에서 각 국가의 대사관에 마약 밀수 관련 사무를 전담하는 법률 공무원을 파견할 것임.

중국과 미국은 모두 법률교류를 중시하며, 양국은 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연합연락소조(联合联络小组)’를 구성할 계획임. 이 협력은 법률전문가 교환, 판사 및 변호사 연수, 법률정보시스템강화, 법률자료 교환, 법률협조에 대한 견해 교환, 행정 절차에 대한 협의, 상법 및 중재 관련 역량강화를 포함할 수 있음.

이 법률협력계획의 일환으로, 중국 사법부 장관은 미국 사법부 장관의 초청으로 1997년 11월 방미 예정.”[2)]

위 성명을 배경으로 1998년 5월에 ‘중미 간 법집행의 협력을 위한 연합연락소조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중국과 미국의 법률영역에서의 협력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2. 한국과의 법제교류

중국은 자국의 법안 혹은 조례의 입안 및 반포를 위하여 수십여 개 국가의 법을 조사하고 이를 자국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접목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2017년 6월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과 한국법제연구원이 진행한 정보공개법 관련 워크숍 역시 그 예 중 하나이다. 중국의 경우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모두 국가기밀에 속하였으나 2008년 이후 정부의 투명도 제고를 시작하였고, 이를 위해 정보공개 조례를 반포하고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정보공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첫째는 정부의 주동적인 공개, 즉 선제적 공개이고 둘째는 요청에 의한 정보 공개의 형식이다. 현재는 2008년도에 재정된 정보공개 조례에 대한 수정 및 개정 작업을 실시 중이며, 이 조례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정보공개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한국법제연구원과의 워크숍 역시 정보공개법에 대한 한국의 법제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중국 내의 어려움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은 학술적 교류의 형식을 통해서도 법 구축 분야의 법제교류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중미연합성명(中美联合声明)>,1997년 10월 29일

3. EU와의 법제교류

중국과 EU는 2015년 제17차 중국-EU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EU 법률사무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하였다. 제1회 중국-EU 법률사무대화는 2016년 중국 베이징에서 정식으로 개최되었고, 이는 중-EU 5대 협력 플랫폼 중의 하나로서 중국과 유럽의 상호 간 법률제도 이해 및 다방면에서의 협력동반자관계를 심화시키고자 시행되었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제2차 법률사무대화는 2017년 10월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되었다.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과 EU 위원회 등이 참가한 양국 대표단이 대화를 진행하였고, 벨기에 브뤼셀에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연구토론을 실시한 후,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은 파리 및 프랑스 유관 기관과 교류활동을 개최했다. 제2차 법률사무대화는 '양호규제-입법질량의 이론 및 실천 제고'라는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중국과 유럽 측 40여명의 공무원, 기업가, 학계인사 등이 모여 입법투명도, 이해관계자의 참여, 입법평가 및 정부 계급별 법률의 통일실시 등 문제, 그리고 중국민법전의 편찬 및 발전에 대해 토론하였다.

제2절 기관 역량강화

중국은 자국 기관의 법적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법제교류를 진행하였다.

1. 미국노동부 - 중국의 노동 및 사회보장부

2003년 4월 10일, 중국 노동 및 사회보장부는 미국 노동부와 <노동법협력사업 전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미국 노동부로부터 412만 달러에 달하는 기술지원을 제공받아 중미 양국 간에 노동법의 입법과 집행, 노동법홍보교육, 산업관계 및 노동법지원 등 4개 영역에서 협력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동 사업은 2003년 10월부터 정식으로 개시되었다.[3)]

3) 오일환, "中國과 外國간 法制協力의 現況과 課題,", 아시아법제연구 제9호 2008.10. p.17

2. 독일 - 중국의 법률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협정

2000년 6월 30일,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주임(장관급)과 독일 사법부장은 "중-독의 법률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 협정에 근거하여 행정법, 민법, 상법, 노동 및 사회법, 사법집행의 개선과 공민권리의 보호, 그리고 경제범죄와 횡령부패 행위의 방지 영역에서 매2년마다 법치국가대화를 진행하였다. 주요 형식은 법치국가 심포지움 개최, 중국정부의 입법 관련 자문, 법조인교육, 연구기관 간의 학술교류 등으로 진행되었다.[4)]

3. EU - 중국 간 법률 및 사법협력사업

1998년 당시 중국의 대외무역경제협력부와 EU가 체결한 "중국-EU 간 법률 및 사법협력사업"은 1350만 유로의 금액이 투입된 단일사업으로는 규모가 비교적 큰 사업이었다. 2000년부터 영국문화협회가 중국 사법부와 공동으로 실행하여 2005년에 종료되었으며, 이 사업에 참가한 중국 측 기관으로는 사법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다수의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있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중국법률체계 하에서 전문가들의 법제 관념을 제고하고 유관 법률 기관의 인재를 양성하며 대중들의 중국 법률제도와 권리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EU회원국의 법률제도를 실천적 예로서 권장하는 사항을 포함했다. 해당 사업은 중국의 입법기관, 사법기관 및 각 부처, 언론기관의 공무원 그리고 중국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유럽에 초청하여 연수 및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사업의 주요내용으로 추진하였다.[5)]

4.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 중국 간 법제교류

일본의 법제지원사업은 주로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를 통하여 진행되는 것이 다수이

4) 伯陽, 《德国与中国的法律合作：目标，项目，效果》, '中国法学论坛'第4辑，中德法学研究所，2006年, pp.166-169 (보양, "독일과 중국의 법률협력: 목표, 항목, 효과", 중국법학포럼 제4집, 중독법학연구소, 2006년, pp.166-169), 오일환(2008)상동, pp.19-20

5) 오일환(2008) 상동 p.21

다. 1982년 JICA 중국사무소가 설치된 이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중-일 경제, 기업법 개선협력사업을 추진했고, 2007년부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중일 민사소송법 개정협력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민생의 보장을 위한 법제도정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유관 사업을 지속하며 정부 간 공적인 법제교류를 지속해오고 있다.

제3절 인적 역량강화

1. 한국 정부기관의 법제지원

한국 정부기관 중 법제 지원에 참여하는 기관으로는 법무부, 대법원, 외교부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대법원의 경우 2002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중국, 몽골, 베트남,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파나마, 에티오피아,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등 체제전환국 및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국사법제도 연수과정을 실시하였고, 자체적으로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등 국가의 고위법관을 상대로 한국의 선진 사법제도를 소개하는 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외국법관이 국내대학에서 법학전공 학위과정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정부장학생 초청 사업도 시행하였다.[6)]

2. 미국 민간단체를 통한 법제교류지원사업

미국의 경우, 정부 제정지원을 통한 법제교류지원이 민간단체를 통하여 시행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포드재단 등을 통하여 중국 법학계가 미국의 법률서적을 번역하고, 미국법제연구를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홈볼트재단을 통해 중국법학자들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진행하는 등의 사업이다.[7)] 이는 민간단체에서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수행하

6) 이재훈, 배소현, 주상희, “ODA를 통한 아시아 국가 간 법제 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법제논단, 2012.08, p.87

7) 양효령(2009) 상동, p.126

는 인적역량강화사업의 예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미국 대학들과 인권, 대중의 법적 권리, 경제법 등 영역에서 학술교류를 추진하는 등의 법제교류를 수행하고 있다.

3. 유럽 - 중국 간 학술교류활동

인적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해 독일에서는 독일학술교류센터(DAAD)가 중국과의 학술교류활동을 주로 진행해왔다. 특히, 중국과 독일의 법률분야 대학・연구기관 협력사업의 경우 독일학술교류센터와 중국 남경대학, 독일의 궤팅엔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 중독법학연구소가 책임지며, 중국 측에서는 교육부가 관련 사업을 담당했다.

프랑스는 주로 EU, UNDP,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대학 중심으로 진행하는 법제협력이 많으며, 주로 경제법제 관련 협력에 치중하였으나, 형사법제, 인권분야 등에서도 많은 공동연구작업을 수행했다.

EU 차원에서는 “중국-EU 로스쿨”을 설립하는 형태로 중국 내 EU법의 연구를 촉진시키고 있다. 동 사업은 중국정법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을 협력파트너로 선정하고, 중국정법대학 내에 “중국-EU 로스쿨”을 설립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8)]

8) 오일환(2008) 상동, pp.20-21

제3장 평가와 시사점

중국에 대한 외국의 법제교류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정부 간 협정서 체결 혹은 합의서를 바탕으로 한 법제교류 그리고 대학, 연구원 등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한 학술적 교류의 형식이 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원조 받은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전체 항목이나 원조 규모 그리고 활동내용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해당 통계 집계를 공표한 자료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 드물다. 따라서 기존 연구 문헌과 자료에 대한 의존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 역시 중국에 대한 법제교류지원사업 수행 시에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 등 한국의 기관과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간의 법제교류 경험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여타 해외 정부가 대외법제교류 사항을 성과로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홍보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 정부는 해외 기관과의 법제 교류 상황을 선택적으로 공개 및 게시한다.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공개한 대외법제교류 현황의 조사 및 분석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중국과의 법제교류를 사전에 대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최근 몇 년간 한중간의 법제교류는 지속되어왔다. 특히 한국의 법제처와 중국의 법제판공실 간의 장관급 및 고위 공무원 상호방문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2017년 6월 중국 법제판공실의 한국방문에서는 중국 측의 요청으로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 정보공개법의 발전 및 적용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중국은 현재 많은 국가와 법제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이 조사 및 연구하고자하는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고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중국은 한 국가의 법제 모델을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여러 국가의 법 제도와 이를 적용한 경험을 연구하여 중국의 실정에 맞게 참고 및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법제판공실 측이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과 한국은 유사한 문화권에 있으며 한국의 민주화 경험과 급속한 경제성장 등 배경은 다른 선진국과는 차별화되는 한국만의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서양의 선진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이 우위를 가지는 영역이므로 중국뿐만 아니라 기타 개발도상국들에게도 한국의 경험이 참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과의 법제교류협력을 발전,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의 법제교류를 광범위하게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한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여 교류를 심화시켜나간다면 일회적인 교류가 아닌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제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양효령,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제교류지원 현황과 과제”, 중국법연구, 제12집, 2009년 12월

오일환, “中國과 外國간 法制協力의 現況과 課題,”, 아시아법제연구 제9호 2008.10

이재훈, 배소현, 주상희, “ODA를 통한 아시아 국가 간 법제 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법제논단, 2012.08

중미연합성명(中美联合声明), 1997년 10월 29일

伯陽，《德国与中国的法律合作：目标，项目，效果》，‘中国法学论坛’第4辑，中德法学研究所，2006年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政府法制信息网，“www.chinalaw.gov.cn”

新华网，“www.xinhuanet.com”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프랑스의 법제교류지원사업 현황

양 리 원
(녹색기술센터 연구원)

제1장 개 관
제2장 담당기관별 법정비지원사업 현황 및 내용
제3장 평가와 시사점

제1장 개 관

프랑스의 법제교류지원사업은 크게 세 개의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 개발청(AFD), Expertise France, 그리고 국제사법협력 공익기관(GIP Justice Cooperation Internationale, GIP JCI)이다.

AFD는 민주주의 거버넌스 개선이라는 큰 틀 안에서 프로젝트 세부 활동 항목으로 법과 관련된 지원을 실시하거나, 다른 분야의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법제 정비가 필요할 때 지원을 실시한다.

Expertise France는 협력대상국이 거버넌스와 법치주의 분야의 행정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정책결정구조 개선, 조직 개편 및 부처 간 조정, 법제개편, 절차의 간소화, 변화 관리, 행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 개선 등을 실시한다.

GIP JCI는 2012년 법무부, 국립사법관학교(École de Magistrature), 형무행정학교(école d'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등 세 개 기관이 협업하여 설립[1]되었으며 현재는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 대법원(Cour de Cassation), 최고사법관회의(Conseil superieur de la Magistrature), 최고공증인위원회(Conseil Superieur du Notariat), 국립변호사위원회(Conseil national des Barreaux), 인권위원회(Defensduer des droits), 국립사법집행관회의소(Chambre nationale des huissiers de justice)가 참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1) 1992년부터 활동하던 동·중앙 유럽과의 법제교류 개선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ARPEJE(Association pour le Renouveau des Échanges Juridiques avec l'Europe centrale et orientale)와 이후 ARPEJE의 활동을 이어 받은 비영리단체 ACOJURIS를 전신으로 한다. GIP JCI라는 명칭으로 5년간 활동하도록 법무부령으로 설치되었으며, 2016년 5년 활동 기간이 종료되어 이를 연장하는 계약 수정안이 법무부령으로 승인되었다.

GIP JCI는 사법적, 법제적 협력을 개발하고, 국제, 지역, 국내 재원과 유럽연합 재원을 활용한 다자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과 법치주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활동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사법 분야 개혁 : 법무부의 역량강화. 사법부의 행정 및 조직(민사·상사·형사·행정법원, 교정행정, 법제·사법협력, 소년법원, 판결집행)

- 법치주의 : 법제 강화 및 국제법규와의 조화, 부패척결, 법무 분야 직군 역량강화 및 교육 과정 설계, 조직범죄 척결

- 기본권 보장 : 사법접근성, 법률구조, 변호사의 역량강화, 피해자 권리 강화,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 차별 방지,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유럽인권법원 판결 접근성 강화

제2장

담당기관별 법정비지원사업 현황 및 내용

제1절 프랑스 개발청(AFD)

AFD의 법제교류지원사업은 주로 대상국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 분야 역량 강화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기관 또는 인적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나, 필요한 경우 건물 제공 등 물자 지원이 포함되기도 한다.

1. 코트디부아르 사법제도 지원

코트디부아르는 2011년까지 10년간 정치적·군사적 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겪어 왔고, 그로 인해 사법시스템이 매우 취약해진 상태였다. 특히 2010-2011년 선거 이후 벌어진 유혈사태로 인해 코트디부아르 남쪽의 건물 등 시설물이 많이 훼손되기도 하였다. 법관을 비롯한 법조계, 교정계 인원은 매우 부족한 상태였으며, 지난 10년간 업무를 수행하던 인력의 역량은 매우 취약해졌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제도에 대한 코트디부아르 국민들의 신뢰저하로 이어졌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2012-2015 국가개발계획을 통해 사법개혁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2012-2015 국가개발계획은 사법 및 교정시스템의 정상화, 독립된 사법제도, 용이한 양질의 사법서비스에의 접근 등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AFD는 2014년 7월부터 다음의 세부 활동으로 구성된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코트디부아르 국가사법교육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교육을 위한 시설물 건립 및 재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사법 분야 학교 4군데와 협업을 통해 인권과 아동

권리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시민사회와 법률구조 기관을 지원하였다. 아동과 청소년 사법 보호국(Direction de la protection judiciaire de l'enfance et de la jeunesse)을 지원하고 사법접근성과 수형자들의 수감 환경의 개선을 지원하였다. 또한 Daloa와 Korhogo 지역 고등법원, Port-Bouet 1심법원, Guiglo 구금소 신축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하였다. Dabou, Boundiali, Oumé, Tuoba et Lakota의 구금소 내에 보건소 설립도 예정되어 있다.

2. 나이지리아 사법효과성 및 거버넌스 강화

나이지리아는 높은 인구증가율과 불법유통, 급진사상주의 확산, 등 지역 불안정이 매우 높다. 불안정성, 경제적 빈곤, 사회적 위기 등으로 국가는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많은 피난민들이 유럽이나 마그렙 국가로 피난을 가기 위해 나이지리아를 경유국으로 들르면서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나이지리아는 넓은 영토를 통제할만한 수단이 부족하여 국경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국경지역의 군부대, 테러리스트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나이제리아의 계속되는 불안정한 상황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2017년부터 4년간 진행될 이 사업은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민주적·경제적 거버넌스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사법관련 분야는 조직범죄와 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사법 분야 관계자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세부 활동 내용은 보코하람 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불안정성을 사법절차를 통해 타개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형사절차의 포화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법무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신매매, 국경지역의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며, 사건의 조사, 기소 등의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치안 및 안보 관련 관계자 간 조정을 지원한다.

제2절 Expertise France

2016년 Expertise France의 전체 활동 예산은 121백만 유로였으며, 이 중 23%가 민주적·경제적 거버넌스 강화에 투입되었다.

1. 그리스 행정부 역량강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그리스는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럽연합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Task force가 구성되었다. Task Force는 그리스의 중앙행정부의 대대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수요를 파악하였고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750,000 유로 규모의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수행을 Expertise France가 실시하게 되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행정부와 관료들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여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고위공무원 채용과정에 대한 법령 채택을 지원하고, 공무원 보수기준 개선 및 공무원 평가 실시에 기여하였다.

2. EU P2P(Partner to Partner)

2015년부터 2년간 520만 유로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재료, 기구, 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지역의 23개 협력국과의 민군겸용품목의 수출검사 분야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협력활동으로 수출관리 관련 법제 도입 지원, 세관 또는 라이센싱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수 교육, 관련 업계의 인식 제고, 우수 활동 공유, 사례연구 등이 있다. 동 프로그램은 영국, 스웨덴, 벨기에 등 여러 유럽 국가의 기관들이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Expertise France는 그 중 하나의 컨소시엄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참여 전문가만 200명이 넘는다.

3. 모로코 예산조직법 이행 관련 역량강화

2014년부터 총 42개월 동안 미화 150만 달러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모로코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 모로코 정부는 국가 재정의 책무성, 투명성, 성과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 모로코는 2015년 6월에 예산법률에 관한 조직법을 공포하였다. 이는 재정 관련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동 법의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Expertise France는 세계은행의 지원금을 통해 예산법률에 관한 조직법의 이행과 관련된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프랑스 공공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모로코 금융경제부에 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이 기술지원 사업은 다년도 예산제도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표들을 사용하도록 하고 관련 문서 및 도구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모로코의 예산 관련 절차를 개선하여 국가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산 집행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개혁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척도이므로, 공공정책에의 파급효과와 공공서비스 효율성 및 질 부분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4. BFTPI(Bahrain French Town Planning Initiative) - 바레인 도시계획과 국토정비 개선 사업

2016년 3월 시작하여 2년간 840만 유로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의 내용은 국토정비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계획·지자체·공공사업부(ministère des Travaux, des Collectivités et de la Planification urbaine)내 도시계획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Planification urbaine, DGPU)에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도시 계획을 지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거버넌스 분야로, DGPU를 비롯한 국토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의 역할을 분석하고, DGPU가 국토개발전략을 세우고 이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서의 업무 범위와 의무를 정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관으로서 DGPU의 역할, 기능, 조직, 절차와 활용 가능한 조치들에 대해 분석·제언하고 도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 운용과 관련 법규에 대한 제언을 실시한다.

5. LGBTI[2] 기금 - 성정체성 및 성적지향성, 인권을 위한 기금

2010년부터 70만 유로의 예산으로 진행된 이 기금은 성정체성, 성적지향성으로 인한 차별 피해자들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 시민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금은 성정체성, 성적지향성에 따른 차별, 소외, 낙인, 편견에 대항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지역 정부 및 공공기관들에 관련 변론 및 로비 활동을 실시하며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개발하는데 활용된다.

2013년에는 토고, 베트남, 필리핀, 조지아의 시민사회 기관들이 지원금을 수령하였다. 지원 활동은 LGBTI 대상 인권 침해 사건의 판별 및 기록화, LGBTI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개정, 권리 보호를 위한 기관 역량강화 등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 NGO인 ICS는 관련 지원금을 통해 트렌스젠더의 권한을 확대하는 시민사회의 변론활동에 참여하였고,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2015년 11월 베트남 하원에 트렌스젠더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법전 개정이 이루어졌다.

6. 모로코 국가인권위원회 역량강화

2015년부터 2년간 120만 유로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모로코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관역량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011년 채택된 모로코 헌법은 굿 거버넌스를 위한 독립기관들을 설립하였다. 이때 설립된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이다. 모로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과 자유권 수호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담당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관 간 연계 사업(twinning)으로서, 프랑스 CNCDH(La Commission nationale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 오스트리아 BIM(L'Institut pour les Droits de l'Homme Ludwig Boltzmann), 네덜란드의 CILC(Le Center for International Legal Cooperation) 등 세 개 기관이 공동 협력하여 역량강화를 실시한다. Expertise France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세 기관의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선거관리, 공공부문 인력 개발,

2)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 and/or intersex'의 약자이다.

CNDH의 기록과 관련된 전문가를 동원하고,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있어서는 직접 역량강화를 실시한다.

이 같은 활동으로 CNDH 및 지역 위원회 관계자들의 역량강화, 절차 개선, 조직개편, CNDH의 활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제고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7. 코트디부아르 보건 기관 거버넌스 개선

2016년부터 2년간 3백만 유로의 규모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AFD가 코트디부아르의 도시개발, 농업, 사법, 교육 등 다분야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 중 보건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Expertise France는 코트이부아르 보건부를 지원하여 보건시스템강화 프로젝트(Projet de renforcement du système de santé, PRSS)를 이행한다. 세부 활동으로 공공보건 법전을 개정하고, 병원개혁을 이행하며, 보건 분야의 민간 기관 및 직업에 적용되는 규제 및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제3절 GIP JCI

2016년 GIP JCI의 총 지원활동 예산은 7백만 유로이며, 2015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처음 활동을 시작한 2012년 대비 두 배로 증가한 수치이다. 2016년에는 총 34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19건의 무상지원, 9건의 기관 간 연계지원(twinning 프로그램), 6건의 기술지원 계약이 진행되었다. 총 215명의 전문가와 10명의 협력자가 총 19개국 526회 해외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활동 일수는 2427일이다.

1. 관련법 구축

(1) 모로코 통화금융법전 작성 지원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금융 분야 개발지원프로그램 2단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중소득국을 위한 신탁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총 36개월 동안 23만

유로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모로코 해외금융 및 재무국을 지원하여 통화금융법전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기술지원 사업은 프랑스 시스템인 MAGICODE를 모로코의 수요에 맞게 이전하고 전문가 팀을 투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며, 동 사업은 Expertise France와 함께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2) 크로아티아 신형사소송법전 지원

2011년부터 24개월 간 115만 유로의 예산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크로아티아 신형사소송법전의 채택을 위해 법무부와 내무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GIP JCI는 법 분야 독일 기술지원 기관인 IRZ와 협업하여, 청소년과 보호관찰 관련 법 전문가인 프랑스 법관 6명을 파견하였다.

(3) 슬로바키아 프랑스-슬로바키아 법학용어사전 작성 지원

2004년부터 48개월 동안 30만 유로의 예산으로 진행되었으며 2014년에는 해당 작업의 전산화가 진행되었다. 동 사업은 2004년 슬로바키아가 유럽연합에 편입하면서 슬로바키아 법률가들이 유럽연합의 법률 용어들과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2. 기관 역량강화 및 인적 역량강화

(1) 리비아 법무부 역량강화

2012년 시작하여 2년 동안 약 85만 유로로 시작된 사업이며 이 사업은 리비아 사법시스템의 역량과 효율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주요 활동은 새로운 법 영역의 직업 훈련과 교육 전략 수립이었다. 이를 위해서 4개의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먼저 전략위원회, 사법연구원 교육위원회, 베이루스와 트리폴리 변호사회 교육 위원회, 그리고 개

혁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사법교육 전략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업은 GIP JCI를 필두로, 국립사법연수원, 스페인 공공정책 및 행정 기관인 FIIAPP, 이탈리아 범죄과학고등연구원(ISISC)이 협업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2) 몬테네그로 신형사소송법전 적용 지원

2010년부터 약 3년간 80만 유로의 예산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신형사소송법전을 유럽연합법 기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법관, 검사, 변호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37명의 프랑스 법관과 변호사, 그리고 6명의 현지 전문가들이 동원되었다.

세부 활동으로 조직범죄·부패·전쟁범죄 척결을 위한 특검 역량강화, 신형사소송법전 적용 관련 법관·검사·경찰 교육자에 대한 교육 실시, 신형사소송법전 적용 평가 위원회 지원, 신형사소송법전 관련 형법 분야 변호사들의 인식 제고 등을 실시하였다. 총 322명의 판검사, 97명의 경찰, 57명의 변호사가 교육을 받았다.

(3) 팔레스타인 고등사법위원회(Haut Conseil Judiciaire, HCJ)의 기관 역량강화

이 사업은 2014년 10월부터 20개월 동안 98만 유로의 예산으로 진행되었으며 사법위원회(Conseil de la magistrature)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HCJ 조직구조와 법원의 구조에 대한 검토, 법원 행정 담당 부서의 평가, 사법조직 경영 지원, HCJ 교육부서 역량강화, 사건 처리 속도 개선을 지원하였다. 동 사업은 프랑스 법관, 서기관 등 전문가와 이탈리아와 벨기에 최고사법위원회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4) 에티오피아 사법아카데미 강화

2013년부터 24개월 동안 60만 유로의 예산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에티오피아 사법 분야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사업은 유럽연합 유럽개발기금의 10번째 계

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에티오피아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에티오피아 법무부장관, 연방최고법원장, 연방교육원 담당자 등 고위관계자 대표단의 파리와 보르도 국립법관학교 방문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구체적인 활동으로 사법교육기관의 연구 및 집필 활동 강화, 국제 활동 개발, 교육 역량강화 등이 실시되었다.

(5) 이집트 사법행정개선 지원

2014년부터 48개월 간 약 900만 유로 규모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이집트의 사법행정 개선을 지원하고 청소년 대상 사법 활동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유럽연합의 재원으로 진행되며, 법무부 개선, 사법연수원, 대법원, 법관학교 등 지원, 미성년자 대상 사법 절차 개선 등을 실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개발부와 공동주최로 모든 법원장(60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제사법 교육 과정을 진행하며, E-교육 방법 전수, 대법원 판례의 일관성에 대한 Skype를 통한 원격 강의, 첫 번째 소년법원 설립을 위한 공개입찰 실시 등의 활동이 진행된다.

(6) 카메룬 사법 분야 지원

2010년부터 55개월 동안 1700만 유로의 유럽연합 예산으로 진행된 동 사업의 경우 카메룬 사법 시스템의 전체적인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세부적으로는 OHADA법[3] 증진 및 상법 강화, 행정법원의 기능 개선, 사법 분야 관계자 역량강화, 규범시스템 개선, 소외된 경제주체들의 사법접근성 제고 등이다. GIP JCI는 8명의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역량강화를 지원하였다. 그 결과 4226명의 사법 관계자들이 교육을 받았다.

(7) 우크라이나 사법 분야 개혁 지원

2013년부터 50개월 간 857만 유로의 규모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우크라이나의 사법

3) OHADA는 아프리카상법통일을 위한 기구(Organisation pour l'Harmonisation en Afrique du Droit des Affaires)이며 OHADA법이란 OHADA에서 채택한 통일법을 의미한다.

분야 개선을 위한 개혁을 지원한다. 재원은 유럽연합이 제공하며, 세부 활동은 사법 분야 개혁 전략 개발, 경찰·검찰 개혁, 사법접근성 강화, 사법부 독립성 보장, 부패 척결이다. 이 사업은 프랑스 내무부 산하 기관 CIVIPOL, 금융경제부 산하기관 ADETEF, 그리고 독일 법무부 산하 기관 IRZ와 폴란드, 리투아니아 법무부가 협업하여 진행한다. 사업 대상자는 우크라이나의 법무부, 국회, 변호사, 대법원, 내무부 등이다. 2017년 12월 종료 예정인 동 사업은 Expertise France가 이어 받아 4년간 연장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8) 터키 옴부즈맨 제도 도입

2014년부터 24개월간 158만 유로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스페인 옴부즈맨과 프랑스 인권위원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치주의, 인권 및 자유권, 투명성, 정의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보장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역량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유럽연합 기준에 부합하는 옴부즈맨 기관 설립, 유럽연합의 best practice 및 그 동안의 경험에 부합하도록 옴부즈맨 관련 터키 국내 법제 검토, 옴부즈맨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여론 조성을 위해 대중 인식 제고 및 기관 홍보 등을 실시한다.

(9) 발칸지역 조직범죄 척결

발칸지역이 유럽지역의 안정화에 중요하다고 보고 2014년부터 500만 유로 규모의 발칸반도 지역 국가(알바니아, 세르비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몬테네그로)를 대상으로 국제사법공조, 정보교환 및 보호, 금융수사, 공동 수사 등 국제 수사 기술 공유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GIP JCI는 아프리카 사하라이남 지역에서 코트디부아르 법무부 유아·청소년 사법보호국 지원 및 국립사법교육원 역량강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법·교정행정· 경찰 관련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였다. 마그렙[4]·중동 지역에서는 알제리 교정행정 및 사

4) 아랍세계의 서쪽지역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 지역을 말하며, 리비아 · 튀니지 · 알제리 · 모로코 등이 해당 지역의 국가이다.

회재편입국 지원, 알제리 사법 분야 지원 프로그램 3단계 실시, 이집트 사법행정 개선, 리비아 법무부 및 내무부 역량강화를 통해 사법제도 및 치안 개선 실시, 튀니지 교정행정 기관 강화 사업을 진행하였고, 아시아지역에서는 중국의 사법접근성 프로그램, 키르키즈스탄 법치주의 강화, 라오스 사법집행관 교육 과정 개선 및 판결집행 관련 법 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3장 평가와 시사점

프랑스 법제정비지원 사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중 가장 특기할 만 한 점은 GIP JCI라는 법제 분야 협력활동을 위한 중심기관이 있다는 점이다. GIP JCI에는 법무부, 국립법관학교(École de Magistrature), 형무행정학교(école d'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 대법원(Cour de Cassation), 최고사법관회의(Conseil superieur de la Magistrature), 최고공증인위원회(Conseil Superieur du Notariat), 국립변호사위원회(Conseil national des Barreaux), 인권위원회(Defensuer des droits), 국립사법집행관회의소(Chambre nationale des huissiers de justice) 등 법 관련 분야 주요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법 분야 협력 활동이 GIP JCI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기관 간 전문성이 집중되고 연계가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

프랑스 법제지원사업의 주요 형태는 역량강화이다. 코트디부아르의 국가사법교육원 및 법원 설립 사업에서 건물 설립 등 물자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는 코트디부아르가 유혈 사태 등 극단적인 정치적 군사적 위기 상황을 겪은 데에서 기인하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관역량강화 사업과 법무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역량강화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기관 역량의 경우, 기관 간 연계 사업인 twinning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터키 옴부즈맨 도입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프랑스 기관인 인권위원회와 스페인 옴부즈맨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다. twinning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경우, 기관의 구조, 운영 노하우 및 전문성이 그대로 전수되어 총체적 형태의 지원 사업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의 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법관, 검사, 경찰, 변호사, 사법집행관들의 개별 역

량강화도 실시하지만, 이들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발 사업과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교육시스템의 구축과 교육자 대상 교육은 기술지원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가능하며 독립적인 역량강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특이사항은 프랑스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사업도 있으나, 다른 유럽 국가의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사업이 많다는 점이다. 다년도 사업이면서 사업 예산이 큰 우크라이나 사업의 경우 프랑스 내무부 산하 기관인 CIVIPOL, 금융경제부 산하기관인 ADETEF, 그리고 독일 법무부 산하 기관인 IRZ와 폴란드, 리투아니아 법무부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기관 간 협업, 연계 사례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AFD가 진행하는 다분야 사업 중 법제 분야 사업을 Expertise France가 수행한다거나, GIP JCI가 수행하던 사업을 Expertise France가 이어가는 경우이다. 전문성과 재원의 가용여부에 따라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법제정비지원사업이 시사 하는 점은 상주 전문가를 많이 파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GIP JCI는 이집트에 2명의 상주 전문가, 알제리, 튀니지, 코트디부아르, 알바니에 각 1명의 상주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경우 지사를 두고 12명의 상주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이는 사업의 진행경과를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과 사업 결과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참고문헌

AFD 2016년 활동 보고서 (Rapport d'activité de l'AFD 2016)

Expertise France 2016년 연간 보고서(Rapport annuel, 2016)

GIP JCI 2016년 활동보고서 (Rapport d'activité 2016)

http://www.gip-jci-justice.fr

https://www.afd.fr/

https://www.expertisefrance.fr/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국제기구의 법제교류지원사업 현황

임 희 선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실 위촉연구원)

제1장 개 관
제2장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법정비지원사업 현황 및 내용
제3장 유엔개발계획(UNDP) 법정비지원사업 현황 및 내용
제4장 평가와 시사점

제1장 개 관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개 관

2015년 9월, Post-2015 개발 아젠다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이하 SDGs)’는 경제·사회·환경 및 거버넌스를 포괄하는 개발목표이다. 거버넌스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행정역량강화, 법치주의 강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인권시장, 민간분야를 지원하는 적절한 경제 정책,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향상[1] 등 다양한 하위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법정비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원조공여 규모는 2013년에는 1.9조원, 2015년 2.2조원, 최근 2017년 2.6조원까지 계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ODA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효과성 강화 요구 또한 증대되었다.[2]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SDGs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취약국·계층 관련 사업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취약성의 기준을 분쟁·폭력, 재난, 제도미비 3가지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그 중 법정비지원사업과 연계성이 높은 제도 구축 분야는 ① 거버넌스 구축, ② 공공행정 역량강화, ③ 시민사회 지원 등의 세부분야로 구분하고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3]

---

1) United Nation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5, May, 2005
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17. 6, 2면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취약국 지원 전략”, 2017. 6, 6-7면

법정비지원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법정비지원사업을 수년간 수행해온 JICA와 UNDP 등 국제기구의 사례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협력대상국과 법정비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국제개발협력 , 그 중에서도 법 분야에서의 개발협력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과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제2장에서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법정비지원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관련법 구축, 기관·인적 역량강화, 물리적 시설 지원 등 법정비지원사업 유형별로 접근하여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 3장에서는 유엔개발계획(UNDP) 법정비지원사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UNDP의 사업수행 강점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JICA와 UNDP 사례를 통해 얻은 법정비지원사업 유형별(관련법 구축, 기관·인적 역량강화, 물리적 시설 지원 등) 시사점을 바탕으로 추후 효과적인 법정비지원사업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문가 문헌조사, 외국·국제기구 문헌조사, 협력대상국 문헌조사 및 타 국외출장에서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네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는 국제기구, 협력대상국, 국내·외 전문가들의 관점을 대표하고 있다. 협력대상국 내 소재한 JICA와 UNDP 현지사무소와의 면담내용 일부 참고하여 국제기구의 본부 보고서 내용 외 현지 지역전문가로부터 상세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제2장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법정비지원사업 현황 및 내용

제1절 JICA 법정비지원사업 현황

JICA는 1996년 베트남을 대상으로 시장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정비지원사업과 1999년 캄보디아의 사법제도 강화 및 인적자원 개발을 시작으로 법정비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JICA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8개 국가를 중점적으로 법률 및 사법 분야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JICA의 법정비지원사업은 물리적 시설 지원보다는 개발도상국의 기관·인적 역량강화와 법 구축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물리적 시설 지원에는 다소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2절 관련법 구축

JICA는 1996년부터 (1) 법적 구조를 수립 및 개선하고, (2) 전환경제 및 분쟁 국가의 법적 및 사법 체계를 복원하고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4] 관련법 구축 유형의 법정비지원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 JICA는 다른 국가들의 법제모델을 벤치마크하여 시행착오를 통해 법체계를 발전시킨 경험을 소개하는 등 직접적 정치적 접근은 지양하며 다양한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4) JICA, Official Website, Governance, https://www.jica.go.jp/english/our_work/thematic_issues/governance/activity.html

관련법 구축 지원을 위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장기간 파견되어 협력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협력하는 부처 내 JICA 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다. 대상국 법률전문가는 일본 법률전문가들과 법률문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 평가하며, JICA 본부에서는 법률 실무자 및 학자로 구성된 팀이 법 구축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모니터링 한다.[5)]

관련법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정비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전문가들이 통역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용된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신중하게 확인하고 협력국가의 주체성을 존중한다는 점이다.[6)] 일본 법률전문가들은 일본 법체계 발전경험을 강요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의 법률에 대한 경험을 소개함으로서 해당 국가의 사회에 가장 적합한 법률시스템을 함께 도출하고자 한다.

관련법 구축은 법률 초안 작업부터 법이 실제로 사용되고 개정되는 단계까지 지원하는 중장기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법이 제정된 후에도 세미나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에 법 내용을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JICA는 관련법 구축의 장기적 목표인 인식 제고와 법 접근성 강화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1. 법제도 개발 지원 프로젝트

JICA의 법정비지원사업은 민법 등 기본법 정비(베트남,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중국, 동티모르)와 경쟁법 등 경제법 정비,(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민사 분쟁의 화해 조정 제도 정비(몽골,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지원을 해왔다.[7)] 일본 무상 원조 프로그램의 일환이 JICA 대표사례로 꼽히는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법제도 구축 사업을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5) JICA's world, 앞의 글, 3면.
6) JICA's world, 앞의 글, 3면.
7) 양지은, “JICA의 법의 지배” 한국행정학회 제2015년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5.12, 302-318

<표 1> 법률 시스템 개발 지원사업[8)]

대상국	프로젝트 주제	협력기관	프로젝트 목적
베트남	법률 및 사법 제도 개혁을 위한 기술 지원 프로젝트	베트남 법률 및 사법 기관(법무부, 국무총리실, 인민대법원, 인민대검찰청 및 베트남 변호사 협회 연맹)	• 법적 규범 문서 검토 • 법적 규범 문서 초안 준비 • 합법적인 규범 문서의 균일한 적용, 시행 및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능력 개발
캄보디아	캄보디아 민법 및 민사소송법 초안 작성	법무부	•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가 안전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민사법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미얀마	법률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프로젝트	법무부 장관실, 미얀마 연방 대법원	• 법과 규정의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과 균일한 적용에 기여하고 법치주의, 민주화 및 경제개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제3절 기관·인적 역량강화

JICA 법정비지원사업의 주요 협력부처는 법무부이며, 기관 및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가파견, 초청·현지단기연수와 세미나를 포함하고 있는 기술협력사업(Technical Cooperation Project)을 진행하고 있다.[9)]

기술협력사업의 일부인 역량강화 연수를 살펴보았을 때 타 국제기구의 기관·인적 역량강화 워크숍과 다른 점은 인재육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며, 현지에서 구축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강점을 가졌다는 것이다. JICA 역량강화는 크게 법을 운용하는 조직의 기능 강화 및 실무 개선을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역량강화와 법조인, 법무·사법 관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적 역량강화가 있다.

8) International Civil and Commercial Law Centre Foundation(ICCLC), Official Website, Legal System Development Support Projects, http://www.icclc.or.jp/english/project/

9) JICA, Official Website,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s, https://www.jica.go.jp/english/our_work/types_of_assistance/tech/projects/index.html

초청워크샵 또는 연수를 통해 연수참가자들은 일본 학자 및 법률실무자와 토론을 하고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실무적인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초청워크샵 및 연수는 약 2주 정도로 단기연수로 분류되며, 장기연수로는 인적 자원 개발 위한 일본 무상 원조 장학금(Japanese Grant Aid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Scholarship)이 있다. 장기 연수란 개발도상국 인력이 일본에서 2-3년간 거주하면서 일본대학원 특정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10]

제4절 물리적 시설 지원

미얀마 법의 지배 촉진을 위한 JICA의 협력 보고서에 따르면, 법의 보급, 법률 및 사법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법제센터(Legal-aid institution) 설립 지원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현재 개발도상국에 법제 센터를 실제로 설립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1] 또한 물리적 시설 지원보다는 관련법 구축과 기관·인적 역량강화 지원에 많은 지원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 국회 내 연구소에 보고서를 기부하는 등의 지원은 하고 있으나 물리적 시설 지원에는 다소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 JICA, Capacity Development for Legal and Judicial Sectors in Developing Countries, June, 2009

11) JICA, Web document, JICA's Cooperation for 'Rule of Law' Promotion in Myanmar, gwweb. jica.go.jp/km/FSubject0401.nsf/.../$FILE/20130612.pdf

제3장 유엔개발계획(UNDP) 법정비지원사업 현황 및 내용

제1절 UNDP 법정비지원사업 현황

UNDP의 법의 지배(rule of law)와 정의에 대한 접근성(Acess to Justice) 프로젝트는 (1) 정의와 구제 수단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및 인간의 권리 보장, (2) 효과적인 사법제도 수립, (3) 소형 무기 및 가벼운 무기의 확산 억제와 지역 사회 안보 보장, (4) 성 평등과 성에 기반한 폭력에 대처 및 여성의 참여와 지도력 향상, (5) 국가 인권기구의 업무 강화 및 인권 증진과 보호를 지원하는 국제 인권기구 프로그램 개발, (6) 폭력 및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촉진 등의 목적을 바탕으로 수행되고 있다.[12)]

UNDP는 현재 약 40개 국가를 대상으로 법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Global Programme on Strengthening the Rule of Law)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법 구축, 기관·인적 역량강화, 물리적 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체계적인 법정비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타 국제기구와의 차별되는 점으로는 원조기관과의 연결(Aid Coordination)을 꼽을 수 있다. UNDP는 (1)덴마크, 캐나다, 프랑스, 호주, 스웨덴, 일본,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미국 및 유럽 연합의 개발 지원 기관, (2)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3)개인 법률 회사 등 기 구축된 선진국가들, 국제기구, 민간부문의 법률회사와의

12) UNDP, Official Website, http://www.undp.org/content/undp/en/home/ourwork/democratic-governance-and-peacebuilding/rule-of-law-- justice-and-security.html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과 함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13]

제2절 관련법 구축

UNDP는 전 세계 약 40개 파트너국가를 대상으로 법의 지배(Rule of Law) 프로그램를 진행하고 있으며,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1) 법치와 인권 강화한 정치 환경, (2) 사법 및 사회보장기관 강화, (3) 공동체 안보와 무력 폭력 감소, (4) 강력한 국가 인권기구, (5)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 접근성, (6) 과도기적 정의, (7)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정의, 안전 및 인권 등 7개의 분야에 초점을 두고 관련법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14]

2016년 주요 성과로는 코소보 법무부를 대상으로 중재 법안 초안 작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으며, 본 법안은 2016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15] UNDP는 효율적이고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중재제도를 구축하고 시민들은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3절 기관·인적 역량강화

UNDP 법정비지원사업의 주요 협력부처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이며, 개발도상국의 기관 및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가파견, 초청·현지단기연수와 세미나, 포럼을 제

13) UNDP, UNDP and Denmark work with Vietnams law makers, judges and prosecutors, http://www.vn.undp.org/content/vietnam/en/home/library/democratic_governance/shared-commitment-and-resources-for-strengthened-legal-instituti.html

14) UNDP, Rule of Law Annual Report 2016, June 2017

15) UNDP, 앞의 보고서

공하고 있다. 전문가파견의 경우, UNDP 내 전문가를 파견하기 보다는 IDLO와 UN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타 국제기구의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취약 국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취약 국가를 대상으로 과거 진행했던 기관·인적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다.

제4절 물리적 시설 지원

UNDP는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법센터(Rule of law centre) 설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만달레이와 라시오에 두 개의 시범운행 센터를 시작으로 양곤을 포함하여 만달레이, 타웅지, 미치나 총 4개의 지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 법센터는 법률 전문가, 경찰 및 지방 행정 공무원, 지역사회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지방 법무 문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제4장 평가와 시사점

개발도상국으로부터 한국 법제분야 발전경험을 토대로 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국내 ODA기관들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함에 따라 ODA분야에 대한 수요와 공급, 그리고 ODA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2조원이 넘는 ODA사업 예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담부처 또는 세부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법정비지원사업의 효과성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들을 직면하고 있다. 국제기구의 사례를 통해 이 같은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베트남, 미얀마를 대상으로 법정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JICA와 UNDP의 경우, 네트워크 구축과 강화, 그리고 기 구축된 네크워크를 유지하는 데 많은 인적, 물리적 자원을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JICA는 법정비지원사업의 주요 협력부처인 법무부 내에 사무실을 두며 네크워크를 유지 및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베트남과 같이 많은 프로젝트를 하는 국가일 경우에만 여러 협력부처/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어 JICA 현지사무소가 특정 부처 내에 소재되어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협력대상국에 대한 법정비지원사업의 지원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협력국가의 환경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현지 현황자료가 효과적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협력전략(CPS) 자료를 통해 현지 현황을 파악하는데 제약이 있으며, 현지 대사관과 현지사무소를 활용하여 현지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 검토가 필요하다. 현지 대사관과 현지사무소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한 자료들이 많으며, 서랍 속에 방치되어 있는 자료를 국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플랫폼이 필요하다. JICA와 UNDP의 경우, 현지에서 얻은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본부와의 상시적인 공유하고 있어 현지사무소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셋째, ODA사업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위해 ODA거버넌스 구조체계를 재정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법원, 사법연수원, 법무부 등 많은 법제분야 유관기관들이 법제분야의 ODA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중복성과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해 검토가 부실하다. ODA거버넌스 구조체계 재정비를 통해 지자체와 NGO 단위에서 하는 지역 레벨의 ODA사업과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레벨에서의 사업중복성 검토가 시급하다.

넷째, ODA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외무성이 중심이 되어 정책 레벨과 분야별 프로젝트 레벨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ODA사업 수행기관의 경우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만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ODA사업 수행기관도 있지만 성과평가를 진행하여 관련 문건을 제출해야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많은 지자체의 경우, 개별 ODA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일본의 외무성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평가와 전반적인 ODA수립계획에 있어 내용과 깊이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드러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각 부처의 장관급과 현직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학계 저명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실무위원회와 평가소위원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법무성의 선택과 집중과는 다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취약국 지원 전략”, 2017. 6.

국제개발협력위원회, “'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17. 6.

양지은, “JICA의 법의 지배” 한국행정학회 제2015년 하계학술발표논문집 , 2015.12, 302-318

JICA, Capacity Development for Legal and Judicial Sectors in Developing Countries, June, 2009

UNDP, Rule of Law Annual Report 2016, June 2017

United Nation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5, May, 2005

International Civil and Commercial Law Centre Foundation(ICCLC), Official Website, Legal System Development Support Projects, http://www.icclc.or.jp/english/project/

JICA, Official Website, Governance, https://www.jica.go.jp/english/our_work/thematic_issues/ governance/activity.html

JICA, Official Website,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s, https://www.jica.go.jp/english/our_work/types_of_assistance/tech/projects/index.html

JICA, Web document, JICA’s Cooperation for ‘Rule of Law’ Promotion in Myanmar, gwweb.jica.go.jp/km/FSubject0401.nsf/.../$FILE/20130612.pdf

UNDP, Official Website,
http://www.undp.org/content/undp/en/home/ourwork/democratic-governance-and-peacebuilding/rule-of-law--justice-and-security.html

UNDP, UNDP and Denmark work with Vietnams law makers, judges and prosecutors,
http://www.vn.undp.org/content/vietnam/en/home/library/democratic_governance/shared-commitment-and-resources-for-strengthened-legal-instituti.html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